

韓國近代衛生行政에 관한 研究

金 榮 煥

高麗大學校 保健專門大學校 保健行政科

A Study of the Hygiene Administration in Recent Korea

Yong Hwan Kim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Junior College of
Allied Health Sciences,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change and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the hygiene administration during the period of modernization of our nation which promoted by the open door policy of our country chiefly under the pressure of the foreign countries. During that period Korea had reorganized the old political system radically and introduced the western medical system.

Through the close study of literature concerning the system of the hygiene administration, the laws of health and hygiene, the environmental sanitation organizations and their practical activities the author obtained the conclusions as following :

1. The government passed around 40 laws of health and hygiene from the time when the bureau of hygiene was founded in 1894 to the annex of Korea to Japan. Most of the laws were believed to be established by the enforcement of Japanese government.

When the epidemics were prevailing, a decree for the prevention of the epidemics was proclaimed by the Japanese president of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police. It is shown well that the sovereignty of Korea had been deprived.

2. After the annex of Korea to Japan, the hygiene police and the general police belonging to the bureau of national police shared the tasks of health and hygiene. This was a temporary system which had existed just during the colonial period.

As for the water-suppl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ility among the various environmental hygiene facilities, the rate of supply was remarkably high in Japanese rather than in Korean.

3. During the period of American military administration, it is notable that the division of hygiene in the bureau of national police was replaced by the bureau of hygiene. This period is regarded as the turning point when hygiene administration was operated by means of education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American system of public health.

4. Ever since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government, the laws of health and hygiene which had been establish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have been put into operation without much change except several regulations concerning food.

I. 緒 論

1. 研究의 意義

어느 나라이건 그 나름대로의 風土의 環境에 맞은 固有文化가 있고 隣接國이나 그 외의 他國으로부터 文化의 流入을 통해 固有文化와 他國文化가 接木되어 時代的 文化發展의 過程을 겪게 된다.

우리나라는 오랜 期間 中國文化圈에 속해 있어 地理的으로 이에 의한 影響을 크게 받아 오면서 朝鮮時代에는 儒敎를 바탕으로 한 特有한 文化를 이룩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西醫學의 知識은 實學思想이 꽃피우게 된 18世紀 中葉인 英祖朝(元年 1725年)때의 實學의 巨頭인 星湖 李瀾에 의하여 처음으로 紹介된 바 있고 그 후 朴燕岩, 丁茶山, 李圭景 등의 여러 著書에서 西醫學의 優秀性을 記錄하고 있다.¹⁾

朝鮮朝 末期에 이르러 實事求是 思想에 立脚한 實證科學思潮의 學風은 그 후 開化思想으로 이어져 近代의 氣運이 짙게 된다. 이 무렵인 19世紀 中葉 淸國 咸豐年間(元年 1851年 哲宗 2年)에 上海 및 廣東에 와 있던 英, 美 宣敎會 醫師들이 翻譯 刊行한 西醫學 漢醫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始作하였으나 당시에는 一部 知的 好奇心만 끌었을 뿐이었고 1864年 高宗이 即位하자 平安, 英海道等地에서 局地的으로 實施하던 牛痘種法도 天主教徒 彈壓과 함께 中斷되어 진다.²⁾ 高宗 13年(1876年) 韓日修好條約이 江華營 鍊武臺에서 調印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원하던 원치 않든 간에 近代化와 인연을 맺게 되고 西歐의 秩序를 制度化하기에 이르른다. 條約締結 이듬해인 1877年에 벌써 日本으로부터 西醫學의 術法이 導入되며 그 후 高宗 21年(1884年) 開化黨에 의한 甲申政變으로 인한 美國 改新敎 宣敎醫師들의 活動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醫療行政 및 醫學敎育制度가 西醫學을 中心으로 점차 바뀌게 된다.²⁾

開港以後 庚戌 韓日合併에 이르기까지 韓日關係는 所謂「開化指導」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日本

의 政治的 介入, 1882年 韓美條約 以後 列強들과의 開放體制 사이에서 日本勢力의 浸透, 甲午更張에서의 政治改革의 刺戟, 更張 以後의 內政干涉과 政治單位의 直接的 改編等 政治史의 側面으로 日本의 浸略政策이 露骨化하기 始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改革은 우리나라의 舊秩序를 파괴하여 植民地化 하려는 저들의 前哨作業일 뿐이었다. 여기서 西歐의 近代化의 受容이란 肯定的 側面과 歪曲되어 作用하는 外勢의 排除란 否定的 側面을 同時에 內包하는 二重構造로 나타내게 되었다.³⁾

日帝는 우리의 財源 및 勞動力을 搾取하기 위하여 저들이 만들어 놓은 鐵道, 道路, 電氣, 水利施設 등을 마치 우리나라를 위하여 베풀어 준 것이라고 糊塗하고 있다.

한 國家의 모든 制度가 그러하듯이 保健衛生制度 역시 그 時代의 社會環境 即 政治的 形態, 經濟的 興件, 文化의 水準等 그 외 諸般要因에 依해 相互 密接한 聯關性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여기서 看過해서는 안될 點은 日帝에 의해 制度化되고 施行된 衛生行政도 植民地 政策에 依한 便宜의 施政의 一環이었다는 事實이다. 過去의 醫療行政이나 保健衛生施設이 다른 分野와는 달리 收奪의 對象이 아닌 施惠의 側面으로서의 觀點도 또한 警戒해야 마땅할 것이다.

當時만 하여도 疾病의 治療를 目的으로 發展하였던 醫學은 그 概念이 점차 發展하여 疾病의 豫防의 側面을 한층 重視하게 되어 個人의 健康은 勿論 어느 地域社會나 全體社會集團의 健康을 追究함이 普遍的 傾向이었음을 知悉케 된다.

昨今까지 西歐醫學 導入 以來 保健史의 面的 研究는 主로 醫學 또는 醫療史 등에 關한 것은 흔히 接할 수 있으나 公衆保健 側面인 衛生關係史에 關한 것은 醫學史에 部分的으로 取扱되었거나 거의 無視되어 있어 이렇다 할 業績을 찾아 보기 어렵다. 이러한 理由를 생각해 보건대 첫째, 當時에는 衛生이라는 말이 극히 폭넓은 意味로 쓰여 醫務, 藥務 및 기타 保健全般에 걸친 包括的 用語로 사용되었다는 點, 둘째 過去 刊行된 關係文獻이나

資料가 極히 稀少하다는 點을 들 수 있겠다.

本 研究에서는 우리나라가 近代化의 始發點인 甲午更張에서부터 國權을 빼앗긴 35年間 日帝 警察行政의 一環으로 施行되어 왔던 環境衛生行政의 諸般事項을 再照明하고 光復 以後 軍政期 美國의 公衆保健制度가 새로이 定着하여 大韓民國政府 樹立期 以後까지의 變遷過程을 綜合的으로 集成해 보고자 本 研究를 試圖하였다.

2. 研究資料 및 力法

本 研究는 文獻考察에 依한 調査를 하였다. 資料文獻으로는 國會圖書館에서 刊行된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Ⅰ~Ⅷ(1972), 日本統監府刊 「韓國施政年報」(1906~1910), 朝鮮總督府發行 「朝鮮施政年報」(1911~1926, 1933, 1935, 1938), 「朝鮮事情」(1933~1938, 1941~1944), 「朝鮮法令輯覽」上卷(1940), 平安南道警務部刊 「衛生警察一斑」(1913), 白石保成著 「朝鮮衛生要義」(1918), 小申政次의 「朝鮮衛生行政法要論」(1921), 濱野鍾太郎 「朝鮮醫藥法典」(1924), 京城日報社 「朝日年鑑」(1933) 등을 主로 參考하였으며, 그 外에 「서울六百年史」第三, 四, 五卷(1970, 1981, 1983) 韓國法制研究會編 「美軍政法令總覽」(1971), 「大韓民國法令集」(1948~1953), 保健年鑑社編 「大韓保健年鑑」1945~1955 (1956), 國立保健院 「保健事業評價調査豫備調査報告書」(1961), 「國立保健研究院發達史」(1978), 서울特別市 「糞尿行政現況과 將來對策」(1961), 서울特別市 「清掃行政概要」(1968) 등을 主로 參考하였다.

3. 關聯研究의 概要

韓國近代保健醫療史에 關한 研究書는 1960年代에 이르러 發表되기 始作하였다. 金斗鍾의 「韓國醫學史」(1966)는 古代에서 光復까지 通史의인 單行本으로 이 分野의 代表的인 著書로 認定되고 있으며 姉妹書格인 「韓國醫學文化大年表」(1966) 그리고 開化期부터 1960年代까지 以上의 著書에서 拔萃要約한 「韓國西醫學史」(1978)를 들 수 있으며 또한 盧正祐의 「韓國醫學史」(1970)도 上記 著書의 內容과 大同小異하다. 最近에 「韓國醫學 100年史」(1984)에도 새로운 內容은 없었으며 金重明의 「醫史學概論」(1986)은 東西洋 및 韓國의 醫學

史를 要約記述하고 있다. 日書로는 三木 榮의 「朝鮮醫學史及疾病史」(1962) 및 「朝鮮醫事年表」(1985)의 力著가 있다.

한편 論文으로는 安商璟의 「韓國衛生行政機構變遷의 最近世史的 考察」(1960) 한남혁의 「韓國醫療制度變遷에 關한 考察」(1968) 홍승규의 「韓國醫療制度에 關한 研究」 權彝赫의 「韓國醫學의 發達史」(1968) 및 申東源의 殖民地 時代의 保健政策을 批判究명한 「日帝의 保健醫療政策 및 韓國人의 健康狀態에 關한 研究」(1986) 등이 本 論題와 特히 關聯있는 業績들이다. 그 外 徐聖濟의 「우리나라 學校保健事業에 關한 研究」(1985)가 있다. 資料文獻과 이들 研究業績을 參考하여 本 論題를 考究하였다.

Ⅱ. 甲午更張과 大韓帝國時代

日本은 美國의 強要에 못이겨 開國하고 (哲宗 5年, 1854年) 維新革命에 依하여 天皇帝政府를 樹立(高宗 5年, 1868年), 近代化의 길을 열어 西歐文明의 積極的인 導入과 아울러 改革을 실시하게 되었다. 資本主義 成長發展은 明治政府의 侵略主義로 具現되어 高宗 12年(1875年) 5月頃부터 우리나라의 鎖國政策을 무너뜨릴 目的으로 雲揚號事件을 挑發하여 결국 이듬해인 1876年 2月 江華島에서 굴욕적인 韓日修好條約이 이루어진다. 以後 繼續해서 西歐諸國과의 修交條約이 締結되어 門戶를 開放한 朝鮮은 受動的으로 世界資本主義 舞台上에 連結되어 半封建的, 半殖民地化의 過程을 건게 되었다.⁴⁾

日本에 먼저 開國한 朝鮮에서는 衛正斥邪論은 차츰 진정되어 가고 開化風潮라는 새로운 思潮가 나타나게 된다. 金玉均 등의 初期 開化派 人士들은 外國의 近代科學文明과 技術을 積極 收容하여 封建政治體制를 改革함으로써 國力을 培養하고 나아가서는 外來侵略勢力에 抵抗할 수 있는 內外政策의 樹立이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믿어 甲申政變 以後 王權體制를 改革하여 獨立立國으로서의 基盤을 세우고져 하였다. 甲申政變을 前後하여 發端이 되어 甲午更張으로 制度上의 改革이 示現되었다.⁵⁾

甲午更張은 日帝의 武力과 韓國政府內 開化派

와의 折衷妥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수궁기 어려운 면은 있지만 近代國家體制로 移行하는 契機가 된 것만은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第1次改革은 政治體制的 改編으로 高宗 31年(1894年) 王室關係의 宮府體制와 一般行政機構體系를 完全히 分離하여 宮內府와 議政府官制를 各各 分離시켰다. 宮內部官制는 從來의 王室, 王室外戚에 관계되는 機關과 宗廟, 社稷, 諸宮殿, 陵園 등을 管掌하는 系列의 官署를 말하고 議政府官制는 議政府를 最高機關으로 삼고 舊制의 六曹를 改編하여 그 밑에 內務, 外務, 度支, 軍務, 法務, 學務, 工務, 農商務 등 八衙門을 두고 總理代身을 首班으로 各衙門에 判書를 大臣, 參判을 協辦이라 改稱하고 參議, 主事 등의 官職을 두었다. 그리고 議政府官制에는 其附設機關으로 軍國機務處, 都察院, 中樞院, 義禁司, 會計審査院, 警務廳 등을 두게 되었다.⁶⁾ 第二次改革은 高宗 32年(1895年) 日本公使가 提示한 「洪範 14條」로 內閣改革綱令에 따라 淸國과의 切錄, 閔妃와 大院君의 政治 干與를 철저히 배제함을 主眼點으로 한 것으로 最初의 近代憲法的 性格을 띤 改革이 다시 이루어졌다. 第一次改革 當時 8個衙門이 7個部 即 外部, 內部, 度支部, 軍部, 法部, 學部, 農商工部로 되었으며 內閣 및 7個部 所屬 各局事務를 細分化하여 課를 設置하였다. 한편 地方官制는 從來의 8道를 廢止하고 全國을 23府로 나누어 小地域主義를 택하여 道 이하 牧, 府, 郡, 縣을 통털어 郡으로 統一하였다가 1896년에는 다시 全國을 13道로 나누고 7府牧, 331郡으로 改編하였다. 1897年 10月 12日 皇帝即位式이 舉行되어 國號를 「大韓」이라 정하고 이에 大韓帝國이 成立한다.⁷⁾

1. 衛生行政職制의 新設

高宗 31年(1894年) 6月 28日 議案으로 第一次改革 當時 內務衙門에 衛生局을 新設하고 傳染病豫防事務를 管掌하여 醫藥, 牛痘 등의 일을 兼理⁸⁾ 하였다(參議 1員, 主事 2員). 高宗 32年(1895年) 第二次改革時에는 內부에 衛生局이 設置되고 衛生課와 警務課를 두었다. 그러나 實際로 衛生事務는 分課되기 前이나 後에도 警務廳에 속하게 되어 總務局 管掌事務로서 처음부터 警察行政 範疇에 속하게 되었다(Table 1 參照).

光武 9年(1905年) 內部的 衛生局을 廢止하고 內部 地方局에 衛生課를 두었다가 다음 해인 1906년에는 內部 警務局에 衛生課를 두게 되는데 이때 衛生警察에 關한 事項이 添加되었다. 이 해가 바로 乙巳保護條約이 締結되는 해로 日本 統監府及 理事廳官制를 두게 된다. 隆熙2年(1908年) 다시 內부에 衛生局을 두고 保健課와 警務課로 分離되어 警務課에 衛生에 關한 事項이 추가된다. 이에 對해서는 後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隆熙 3年(1909年) 內部告示 第12號(3月 1日)로서 內部衛生局試驗課⁹⁾를 大韓醫院構內에 設置¹⁰⁾하게 되어 所長과 技士를 두었다.

年度別(1894年~1909年) 衛生職制와 管掌業務 內容을 보면 Table 1과 같다.

2. 保健衛生關係法規

韓末 甲午更張 改革期에 公布 施行된 保健衛生關係法則을 보면 Table 2와 같다.

1895年 甲午更張에서 1910年 韓日合併까지 5年 間에 制定公布된 保健衛生關係法令은 約 40餘種 남짓하다. 一部는 強要에 依하여 一部는 日本側에 諮問 혹은 協助를 求해서 成案이 되었다.

이를 區分해 보면 防疫, 醫事關係가 25件 (60%), 環境衛關係 10件(24%), 獸醫關係 4件(9.5%) 및 기타가 3件(7%)의 順이었다.

3. 環境衛生事業機構

여기서는 當時 施行된 環境衛生事業에 關한 事項만 살펴 보기로 한다.

1) 淸潔所

光武 8年(1904年) 警務廳은 漢城 五署에 淸潔法 實施를 命하고 한편 日公使는 漢城外 仁川港, 釜山港 各國 居住地에 淸潔法施行을 要請하였다.¹¹⁾ 內部大臣은 衛生局長을 日公使館에 보내어 淸潔衛生의 방침을 定하고, 警務使, 衛生淸潔所事務局長, 衛生局長, 土木局長 등 7人을 衛生淸潔所事務員에 依囑하였다. 漢城府 및 警務廳은 內部大臣의 訓令에 의해 漢城內에서 衛生淸潔法을 實施케 되었다. 5月 28日에 漢城內 淸潔所는 南署에 倉洞, 水閣橋, 長洞, 社洞 等地的 川渠를 疏通하였는데, 日本司令部에서도 事務員 8人을 選定하여 韓國兩委員이 合同하여 淸潔方法을 公議하였다. 6月 3日

Table 1. 韓末衛生職制의 變遷

年 度	所屬部署	局 課	管 掌 業 務	備 考
1894年 高宗31年 6月28日(議案各衙 門官制)	內 務 衙 門	衛生局	① 傳染病豫防事務를 管掌 ② 醫藥, 牛痘 等の 業務兼理 (實際衛生事務는 警務廳에서 管掌함)	
1895年 高宗32年 3月25日(勅令 第 53號)	內 部	衛生局 衛生課	① 傳染病, 地方病의 豫防과 種痘, 其他 一切 公衆衛生에 關한 事項 ② 檢疫, 停船에 關한 事項 (實際 衛生事務는 警務廳 總 務廳 總務局에 屬하게 되어 傳染病豫防, 消毒, 檢疫, 種痘, 食物, 飲水, 醫藥, 家畜, 屠場, 基地 其他 衛生事務)	* 同年 5月 25日에 內部分 課規程 改定時 衛生課 業務 로서 地方疫에 關한 事項 醫 務課는 地方病院에 關한 事 項이 追加됨
		醫務課	① 醫師, 藥劑師의 業務 ② 藥品賣藥의 管査에 關한 事項	
1905年 光武9年 2月26日(勅令 第 15號)	內 部 地 方 局	衛生課	① 傳染病, 地方病의 豫防과 種痘 其他 一切 公衆衛生에 關한 事項 ② 檢疫, 停船에 關한 事項 ③ 醫師及藥劑師, 製藥師의 開業과 試驗, 藥品管査에 關 한 事項	內 部 衛生局을 廢하고 內 部 地 方 局에 衛生課를 둔다.
1906年 光武10 年1月	內 部 警 務 局	衛生課	管掌業務는 ①, ②, ③項 上 同 同年 2月 28日에 獸醫豫 防에 關한 事項이 追加됨 衛生警察에 關한 事項이 添加	內 部 地 方 局에서 警務局으로 移屬
1908年 隆熙2年 1月 25日	內 部	衛生局 保健課	① 傳染病及地方病豫防 ② 種痘 其他 公衆衛生	衛生局이 復舊
		醫務課	① 醫師 및 產婆에 關한 事項 ② 藥劑師, 製藥師, 藥種商, 並 藥品賣藥의 取締에 關한 事項 ③ 病院 및 衛生令에 關한 事 項	
1909年 隆熙3年 3月1日(內部告示 第12號)	內 部	衛生局 保健課 醫務課 衛 生 試驗課	①, ②項 上同 ①, ②, ③項 上同 ① 痘苗製造 ② 細菌製驗 ③ 血清製造 ④ 飲食物, 飲食品의 化學的 檢査	衛生試驗所는 大韓醫院 構 內에 設置

資料：國會圖書館，韓國近代法令資料集 I，1970，p. 6.

_____，韓末近代法令資料集IV，1971，p. 26.

_____，韓末近代法令資料集Ⅳ，1972，p. 109.

* 金斗鍾，韓國醫學史，探求堂，1966，pp. 495~497.

홍승근，韓國醫療制度에 關한 研究，R 82，中央大 碩士論文

Table 2. 韓末公布施行된 保健衛生法規 (1895~1909)

令 號 數	法 規	公 布 年 月 日
內部令 第4號	虎列刺病消毒規則(全13條)	高宗 32年(1895) 6. 8
" 第5號	虎列刺病豫防과 消毒執行 規程(全21條)	" " 6. 10
第6號	內部令 第5號를 漢城府外라도 虎列刺病이 流行하는 地方에 適用하는 件	" " 6. 10
" 第8號	種痘規則(全19條)	" " 10. 7
勅 令 第180號	種痘醫養成所規程(全11條)	" " 11. 7
內部令 第12號	種痘所細則(全8條)	光武 2年(1898) 4. 21
奏 本	鴉片烟의 嚴禁을 法律로서 確定하는 件	" (1898) 8. 13
內部令 第19號	傳染病豫防規則(全8條)	光武 3年(1899) 8. 16
" 第20號	虎列刺豫防規則(全14條)	" " 8. 23
" 第21號	腸窒扶私 豫防規則(全4條)	" " 8. 29
" 第22號	赤痢豫防規則(全4條)	" " 8. 29
" 第23號	發疹窒扶私 豫防規則(全4條)	" " 8. 30
" 第24號	痘瘡豫防規則(全3條)	" " 8. 6
" 第25號	傳染病消毒規則(全9條)	" " 9. 11
" 第26號	檢疫停船規則(全22條)	" " 9. 16
" 第27號	醫師規則, 藥種商規則, 藥品巡視規則(全32條)	光武 4年(1900) 1. 4
詔 勅	臨時衛生院을 特設하여 流行病을 豫防하는 件	光武 6年(1902) 6. 22
"	大韓赤十字病院을 設置하는 件	光武 9年(1905) 6. 6
勅 令 第21號	水道局官制(全12條)	光武 10年(1906) 4. 25
內閣告示 第1號	漢城衛生令規約(全6條)	隆熙 元年(1907) 12. 23
法 律 第6號	漢城衛生令 費用에 關한 件(全2條)	隆熙 2年(1908) 3. 30
警視廳令 第5號	妓生團束令(全5條)	" " 9. 28
" 第6號	唱妓團束令(全5條)	" " "
漢城府令 第3號	漢城衛生會費用取立標準及課率	" " 11. 21
內部告示 第12號	內部衛生局試驗課를 大韓醫院構內에 設置하는 件	隆熙 3年(1909) 3. 1
內 部 令 第3號	痘苗賣下規則(全5條)	" " 4. 22
法 律 第21號	輸出牛檢疫法(全13條)	" " 7. 10
勅 令 第67號	大韓赤十字社官制及規則制廢止	" " 7. 23
法 律 第24號	輸出牛檢疫法改定	" " 8. 19
農商工部訓令丙第13號	輸出牛檢疫法規程(全3條)	" " 8. 20
法 律 第24號	屠獸規則(全11條)	" " 8. 21
警視廳令 第3號	醫師, 藥劑師, 藥種商, 藥舖의 吐瀉病及下痢 患者診療 時에 警察官署에 申告하는 件(同年10月廢止)	" " 9. 14
警視廳告諭 第1號	「콜레라」의 豫防에 關한 件(全5項)	" " 9. 16
" 第2號	「콜레라」 豫防策으로 清潔法을 實施하는 件(全7項)	" " 9. 17
漢城府告諭 第2號	衛生에 關한 件	" " 9. 23
內閣告示 第29號	臨時防疫本部規程	" " 9. 30
警視廳令 第5號	京城이나 龍山の 流水에서 食物을 씻거나 洗面함을 禁하는 件	" " 9. 25
" 第6號	飲食物販賣를 制限하는 件(同年10月廢止)	" " 9. 25
警視廳告示 第2號	大韓水道會社 共用水栓으로서 公衆에게 無料給水하는 件(同年11月廢止)	" " 9. 25
" 第3號	井水의 使用을 制限하는 件	" " 9. 25
警視廳令 第7號	傳染病의 豫防에 關한 命令의 違背罰則	" " 10. 1
內 部 令 第6號	蘆島·龍山水源保護에 關한 件	" " 10. 9

資料: 國會圖書館,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Ⅷ, 1972

에 清潔所는 汚穢物處分場으로 南門밖 屈浦 발터 한군데와 東門밖 城邊 발터 한곳을 택하고, 草家 十間以上과 瓦家六間以上은 糞桶을 自備케 하며, 기타는 官費로 桶을 만들어 分給하되, 그 費用은

三個月에 分納케 하였다. 그리고 清潔法 實施後 令에 不服한 者는 警務廳으로 하여금 衛警罪를 懲케 하였다. 6月 8日 漢城府 五署에 다음과 같은 清潔法을 實施케 하였다.

① 各戶主에게 每日 塵芥物을 掃除케 하되 不遵하면 嚴懲한다.

② 糞尿桶을 造給할 터이니 法에 依하여 行케 한다.

③ 井水의 不潔로 疾病이 發生하니 自今으로는 井水를 清潔케 한다.

④ 公衆 便所를 만들 것이니 모두 그곳을 利用하고 街路邊의 放尿는 嚴禁한다.

6月 21日에 清潔事業所는 五署內의 道路를 修築하고 公衆便所를 設置하며 糞桶을 모두 新備케 하여 塵芥와 汚穢物을 驅車로 운반하였고 그 後 人糞會社를 설립 처분토록 하였다.

光武 9年(1905年) 2月 27日에 警務廳은 各署에 命하여 肥料桶 75個에 役夫 1名씩 두어 수시 除去케 하되 그 費用은 各主에게 부담케 하였다.¹²⁾ 當時 日巡査가 매일 아침 쓰레기를 치우게 하고 도랑을 청소하게 巡視하였다.

2) 漢城衛生會

隆熙元年(1907年) 12月 23日 內閣告示 第1號로 반포된 「漢城衛生會規約」을 보면 다음과 같다.

第1條 漢城衛生會는 漢城及附近의 地域內에서 衛生狀態의 改善을 圖함을 目的함.

第2條 漢城衛生會의 事業에 必要한 費用은 韓國政府의 補助金及 漢城在住者에게 徵收하는 金額으로서 此를 充함.

第3條 漢城衛生會의 會長及 評議員을 實함. 會長은 內部次官으로 評議員은 下에 揭한 者로서 此에 充함.

1. 內部警務局長

1. 韓國駐劄軍軍醫部長

1. 警視總監

1. 京城理事廳理事官

1. 漢城府尹

1. 京城居留民團長

1. 漢城府民總代

會長은 必要로 認한 時는 前項 以外에 評議員을 囑托함을 得함.

第4條 漢城衛生會에 實行委員 若干名을 實하되 委員長은 警視總監으로서 此에 充하고 委員은 警視 或 技師及 漢城在住者에서 會長이 此를 囑托함.

第5條 評議員은 事業의 計劃及 費用의 徵收에 關

한 事項을 決定함.

第6條 委員은 評議員의 決議를 執行함.¹³⁾

그 다음 해인 隆熙 2年(1908年) 3月 30日 法律 第 6 號에 「漢城衛生會費用에 關한 規程」은 다음과 같다.

第1條 漢城在所者는 漢城衛生會費用을 부담하는 義務를 負함.

第2條 前條의 費用은 漢城衛生會 評議員이 定한 바에 依하여 漢城府尹이 賦課徵收함.¹⁴⁾

同年 11月 21日 漢城府令 第3號에 依한 「漢城衛生會費用 取立, 標準及 課率」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韓國人 建物一間 一個月 金二錢

但, 學校, 官公署衙廳, 寺院, 社司, 堂宇는 除함.

2. 日本人 以外의 外國人 一人 一個月 金八錢.

但, 事情에 依하여 特히 課率을 協定함을 得함.

3. 會費의 納期는 下와 如함.

第一期 自一月至三月 一月二十日內로 納付

第二期 自四月至六月 四月二十日內로 納付

第三期 自七月至九月 七月二十日內로 納付

第四期 自十月至十二月 十月二十日內로 納付¹⁵⁾

그리고 會費 取扱銀行은 漢湖農工銀行(11月 23日 字)으로 定하였다.

우리나라에서 近代의 環境衛生事業의 嚆矢인 漢城衛生會(舊 徽文高校자리)는 1908年 4月 警視廳 發令에 依한 「除穢規則」으로 漢城內外 除穢事業 및 居宅의 排水, 除穢設備의 改造를 爲해, 첫 事業을 9月부터 實施하였다. 이때 資金은 韓國政府가 6,700圓을, 그리고 日皇太子가 30,000圓을 基本金으로 내었다.¹⁶⁾

漢城衛生會의 年度別 除穢事業實績과 歲入出決算狀況을 보면 Table 3 및 Table 4와 같다.

1908年 9月 첫 事業이 始作되었는 바 그 事業의 實行은 全部 警察官署에서 行하고 市民이 부담하는 衛生會費의 징수도 警察官署에서 하였다. 그 事業實行의 概要는 ① 城外에 汚物處分場을 設置하여 여기에 塵芥소각로 및 屎尿貯溜池를 둠 ② 塵芥와 屎尿運搬用 馬車 120台, 人車 130台, 마구간, 事務室 設置 ③ 屎尿汲取運搬, 塵芥寬集運搬 및 下水溝浚潔에 必要한 諸器具를 備置함. ④ 屎

Table 3. 韓城衛生會除穢事業實績

年 度	除 穢 戶 數		溝渠浚濬間數	使用人員延人員	除 穢 費(円)
	韓人居宅	日人居宅			
1908	29,704	5,322	120,354	50,769	-
1909	38,794	10,148	1,082,646	216,918	156,491
1910	33,923	10,839	2,200,169	242,751	230,886
1911	33,814	12,927	1,524,082	200,358	159,560
1912	34,811	13,932	1,854,425	205,633	-

資料：日本 統監府, 韓國施政年報(1908), 1910, pp. 165~166.
 _____, 韓國施政年報(1909), 1911, pp. 219~220
 _____, 韓國施政年報(1910), 1912, pp. 338~339
 朝鮮總督府, 朝鮮施政年報(1911), 1913, pp. 357~358
 _____, 朝鮮施政年報(1912), 1914, pp. 381~382

Table 4. 韓城衛生會歲入出決算

(圓)

年 度	事業費	收 入					
		賦 課*	雜入**	韓國政府補助金	前年繰越金	奇 附 金	計
1908	95,245	20,998	915	67,000	-	30,000	118,913
1909	162,288	93,862	3,844	130,000	23,667	-	251,374

資料：日本 統監府, 韓國施政年報(1909), 1911, pp. 219~220

* 每月 韓國人은 2錢, 日本人은 8錢씩 징수한 金額

** 糞尿及塵芥拂下料임.

尿는 뚜껑이 있는 約 一斗들이 통을 사용하고 馬車에는 20個, 人車에는 8個를 실어 處分場에 搬出함. ⑤ 各戶 塵芥容器에 수집한 塵芥는 1日 1回 또는 2日 1回 정도 馬車 또는 箱子가 달린 人車에 收去하여 處分場에 搬出함. ⑥ 市街大路로 沿道居住者가 掃除, 除雪, 撤水를 行하고, 中央은 漢城衛生會에서 行함. ⑦ 下水溝渠의 浚濬은 住家邸地에 딸린 것은 居住者가 行하고 其他는 漢城衛生會에서 行함. ⑧ 共同便所는 漢城衛生會에서 設置, 改修하고 그 管理도 每日 同會에서 行함. ⑨ 以上事業에 要하는 人夫는 平均 500人으로 各 分담구역을 定하고 巡查 및 巡查補가 指揮監督함. 等¹⁷⁾이었다.

同年에는 107日間の 實績이 있었고 1911년에 이르러 漢城內外的 清潔狀態가 점차 改善되어 新規事業으로 道路植樹, 電車路 等에 撤水事業을 開始하였으며 한편 京城에 傳染病院 設立 工事を 實施 1911年 7월에 竣工을 한 것이 順化病院으로 8월에 그 業務를 開始하였다.¹⁸⁾ 그 外 屠獸事業을 經營한

實績도 있었으나 이와같이 特異한 地方團體는 日帝의 施政統一方針上 오래 存續할 수가 없다하여 當時 地方行政制度의 統一整理와 함께 1913年 3月 31日字로 廢止되고 그 事務及 權利義務는 京城府에 引繼되었다.¹⁹⁾

3) 臨時防疫本部

1909年 9月 初旬 仁川, 京城方面에 虎列刺, 腸窒 扶斯 等の 疫患者가 數名 發生하더니 24日에는 京城에서만 하룻동안 107名이 폭발적으로 發生하여 日統監府는 韓國政府와 協議한 當日로 臨時防疫本部를 設置하고(Table 2 臨時防疫本部規程 參照) 內部次官을 本部長에, 韓國駐劄軍軍醫部長, 內部警務局長, 京城理事官을 副長으로, 大韓醫院長, 憲兵隊長, 第六師團軍醫部長, 漢城府尹, 京城 龍山 各居留民團民長 等 12名을 評議員에, 警視總監을 執行委員長으로하고 其他 監視委員 8名, 書記 13名으로 組織된 臨時防疫本部는 다음날로 事業 開始를 公告하고 一連의 衛生訓令과 指針이 5件이나 公布되는 바 그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月 13日 漢城府告諭 第 2 號 「衛生에 관한 件」에서

‘惡疫의 原因은 모든 居處의 不潔과 飲食의 생 것과 冷한 것, 酒色에 빠지는 것은 누구라도 衛生에 不注意함이니 우리 政府에서도 國民의 衛生을 深念하여 特別히 衛生會를 設立하고 巨額의 防疫費를 써서 該當 官廳으로 訓令과 廳令으로 알리니 一般國民은 衛生을 注意하여 옛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惡疹을 없애 전국민의 生命을 보호하고자 함이니 아래 사항을 지키도록 이에 告示함.’²⁰⁾

1. 家屋內外 家具, 침구 등을 청결히 하고 便所, 下水溝의 쓰레기, 汚物을 없애 잘 흐르도록 하고, 石灰 또는 石炭酸水로 자주 消毒해서 깨끗이 한다.

1. 飲食은 날것과 찬것, 과일 실은것, 魚肉의 腐敗된 것은 一切 禁하고 모든 飲食物을 반드시 끓여서 먹는다.

1. 여름철이라 해도 문을 열고 자 찬바람을 맞든가 露宿과 暴飲, 暴食이 衛生에 가장 나쁘니 惡疹流行時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同年 9月 25日 警視廳令 第5號 「京城이나 龍山의 流水에서 食物을 씻거나 洗面함을 禁하는 件」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京城 또는 龍山에서 흐르거나 通過하는 물에서 蔬菜와 其他의 食物 또는 食品을 씻거나 洗面하지 못한다’²¹⁾

고 하였으며, 同日字 警視廳令 第6號는 「飲食物 販賣를 制限하는 件」으로 ‘아래의 物品은 販賣함을 禁止함 이에 違反한 者는 拾圓 以下의 罰金 또는 十日 以下의 拘留에 處함.’²²⁾

1. 물론 씻은 蔬菜類
2. 未熟한 菓實
3. 生葡萄
4. 不良한 肉類
5. 腐敗한 飲食物

等을 規制하고 있으며 또한 同日字 警視廳告諭 第3號 「井水使用을 制限하는 件」²³⁾에서는

‘虎列刺病이 날로 창궐하는 바 警察官이 危險한 것으로 認定한 井水는 使用을 禁止하고 現今間 大韓水道公社 共用水栓으로 無料給水할 것이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를 使用하되 몰래 井水를 使用해서 危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²³⁾

이라고 하여 강제성은 없었으나 臨時防疫本部設置 다음날인 9月 25일부터 實施된 共同水道水 無料給水는 同年 11월에 廢止된다(Table 2 警視廳告示 第2號 參照).

以上の 4個令 即 警視廳令 第5號, 第6號 및 告示 第2號, 告諭 第3號는 日人인 警視總監 名義로 되어 있다는 點에 有意해야 할 것이다.

當時 京城內外에 共用水道栓을 全部 買收하여 水道水를 無料로 供給하는 것을 가장 우선하여 實施하고 井水의 使用을 禁止시켰다. 病毒豫防及 撲滅方法으로 ① 水流에 蔬菜, 食物及 食器洗滌禁止. ② 모기, 파리의 驅除의 勵行. ③ 學校, 劇場, 其他 集會의 停止. ④ 隔離病舍의 增設. ⑤ 檢診, 消毒, 患者 輸送事務의 統一 ⑥ 水道 水源池의 保護 ⑦ 民間有力者中 豫防委員의 選任 等 20餘件의 要項을 決定하여 措置한 바 患者 1,387名, 死者 1,081名을 내고 그 이상 患者의 發生이 없어 同年 10月 5日 臨時防疫本部는 廢鎖되었다.²⁴⁾

以上の 事實들로 보아 防疫과 衛生行政 執行過程에서도 이미 日本이 主導的 役割을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4) 上水源保護措置

그後 이와는 別途로 10月 9日 內部令 第6號 霧島·龍山 水源 保護에 관한 件」이 公布되는데 그 內容을 보면 ‘現今間 獨섬으로부터 龍山鐵橋에 이르는 漢江流域에서 고기잡이 漂衣, 기타 洗滌을 하거나 또는 糞尿, 吐物, 塵芥, 其他 汚穢物을 投棄하는 일을 禁함. 本令에 違背하는 者는 十圓 以下의 罰金 或은 二十日 以下의 拘留에 處함’²⁵⁾이라고 規定하고 있어 上水源의 保護對策이 最初로 施行되었다.

5) 上水道施設

우리나라 都市聚落에 上水道施設이 導入된 것은 開港期에 들어 와서이고 두 가지 側面에서 그 必要性이 強하게 認識되었다. 그 하나는 釜山, 仁川, 木浦 等 開港場이된 新都市들은 물의 賦存量이 적어 生活用水의 常時不足現狀을 가져왔기 때문이었고 두번째 要因은 콜레라의 蔓延이었다. 開港前에는 痢疾, 장티프스, 그리고 天然痘가 風土病처럼 盛行하였으나 콜레라는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었다. 콜레라가 들어 온 것은 開港後 高宗 16年(1879) 6月 日本을 거쳐 釜山에 들어온 것이 처

음이며 그후 1886年, 1889年, 1895年 및 1900年 全國에 걸쳐 크게 번져 많은 死亡者를 넘으로서 여름철마다 닥쳐오는 年中行事의 하나처럼 되었으니 上水道 設置의 必要性이 強하게 要請되었다.

電氣, 電車 등을 導入한 H.Collbran과 H.R. Bostwick 兩人的 企業團이 光武 7年(1903年) 12月 9日에 高宗皇帝로부터 上水道施設 經營에 關한 特許를 받으므로 始作되었다. 그들은 光武 9年(1905年) 8月에 이 特許權을 英國人들이 設立한 大韓水道會社에 양도하지만 다시 그 工事施行의 都給을 맡아 光武 10年(1906年) 8月 1日에 着工, 隆熙2年(1908年) 8月에 竣工하여 給水를 始作한 것이 淸溪 貯水池이다. 竣工後에도 大韓水道會社가 經營을 맡았으나 1911年 1月 日本의 濫澤財閥이 이를 買收하고 두달 남짓 經營하다가 그해 3月 31日 朝鮮總督府에 賣却하였다.

同上水道는 漢江에서 取水하여 淸溪 水源池에서 沈澱, 濾過, 淨水한 後 20inch짜리 鐵管으로 水源池로부터 3,334m 떨어져 있는 大峴山 配水池까지 送揚水하여 여기서 城內一圓과 龍山에 給水하는 體係를 取했었다.²⁶⁾

當時 都市水道施設 現況을 보면 Table 5와 같다.

우리나라에서 上水에 依한 給水의 始作은 1902年 釜山이 먼저였는 바 이는 日帝가 港口를 利用하는 저들의 船舶에 물을 供給하기 爲함이었다.

上水源 保護措置는 1910年 9月 統監府令으로서 「水道上水 保護規則」²⁷⁾을 公布해서 水道上水 保護區域은 警務總長 또는 警務部長이 定하는 該當區

域內의 모든 水質을 汚損하는 行爲를 禁止하고 建築物을 짓거나 또는 土地의 狀況을 變更하고 할 때는 所轄警察署의 許可를 받게 하고 우선 仁川, 平壤, 釜山 各 水道 源水의 保護區域을 指定했고 京城水道 上水에 對해서는 水源의 位置, 漢江上流에 對한 여러가지 狀況을 考慮하여 保護區域의 範圍에 對한 調査가 進行되었다.

京城水道는 韓日合邦後 1911年 4月 1日 朝鮮總督府가 英貨 285,000파운드의 換算價格 2,806,153圓에 買收하여 京畿道廳 所官으로 하였다.

그後 1922年 3月 31日 無償으로 京城府에 讓渡²⁸⁾되었다.

Ⅲ. 日帝強占時代

1. 衛生行政職制

1910年 8月 22日 「韓日合邦條約」의 調印으로 國權을 잃고 韓國을 朝鮮으로 改稱하여 10月 朝鮮總督府官制가 公布된다.

總督府官制에서 처음으로 衛生課가 所屬된 部署는 1911年 3月 31日 字로 改編되어 局에서 課가 設置되면서 內務部 地方局아래 衛生課²⁹⁾를 두게 된다. 다시 同年 8月 警務總監部 밑에 衛生課³⁰⁾가 轉管된다. 한편 1919年 8月 19日 警務總監部와 各道 警務部를 廢止하고 警務局을 新設함과 同時에 警察權을 行사케 하여 여기에 衛生課³¹⁾를 두어 衛生事務를 執行하였으며 이 制度가 光復때까지 繼續된다.

1910年 6月 總督直屬下에 中央에다 警務總監部

Table 5. 水道施設狀況

1912年 3月末 現在

敷設地名	給水戶數	給水 1人1日* 給水量 (%) (立方尺)			給水 栓 水					給水開始年 月	設計方式	經營者
		戶數率	日* 給水量	給水人口*	專用	共用	消火栓	船舶給水栓	計			
京城	14,954	23.0	1.5	234,000	2,041	723	328		3,092	1908. 8	펌프式	京城府
仁川	2,170	31.5	4.0	70,000	452	126	184	1	763	1910.12	"	仁川府
平壤	3,150	30.5	4.0	60,000	910	155	210		1,275	1910. 7	"	平壤府
釜山	3,995	70.0	3.0	55,000	815	300	172	1	1,288	1902. 5	貯水式	釜山府民團 共同經營
木浦	907	77.6	3.0	5,000	229	55	35	1	320	1910. 5	"	居留民團

資料 : 韓國總督府, 朝鮮施政年報(1911), 1913, p. 359

* _____, 朝鮮施政年報(1910), 1912, p. 341

(憲兵司令官兼任)를 두고 各道에는 警務部를 두어 地方行政機關과는 따로 分離獨立시키고 朝鮮駐節日本憲兵司令官인 陸軍將官으로 하여금 警務總長을 겸직시켜 警務總監부의 長으로 삼아 統監의 命으로 警察業務를 管轉케 하고 地方 各道の 警務部長은 各道の 憲兵隊長인 陸軍의 在官 卽 領官級으로 兼職케 하여 警務總長의 命을 받아 警察業務를 管掌케 하여 所謂 憲兵警察制度를 確立시켰다. 이들 憲兵警察은 一般警察業務와 衛生事務³²⁾等 各外 各種任務도 遂行하였다.

1914年 府制가 實施되기 前까지는 市街地의 行政組織은 府尹, 面長 이외에 日本人들의 居留民團, 開港場, 開市場, 雜居地에 있어서의 各國 居留地와 專管居留地 그리고 京城의 漢城衛生會, 京城 및 地方에는 衛生組合等이 있어 統一性을 기하지 못한다 하여 行政의 不便을 除去하기 위하여 이러한 機構들은 廢止되고 府가 一般 公共事務를 繼承하게 된다.³³⁾

1919年 8月 19日 官制改革은 道長官을 知事로 改稱하고 憲兵警察制度가 廢止됨에 따라 警務總監府와 各道 警務部가 廢止되고, 各道知事로 하여금 警察權을 行하게 하여 道에 3部를 두어 道事務官을 第3部長으로 任命, 地方의 警察衛生事務³⁴⁾를 담당케 하였다. 그리고 1921年 2月 地方官制의 一部 改定에 따라 第3部를 警察部로 改稱하게 되고, 이와 같은 地方行政制度가 光復時까지 維持하게 된다.

한편 1914年 4月 1日 京城府 職制中 衛生業務를 담당하였던 곳은 內務係였는데 衛生에 關係된 事項만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公衆과 個人衛生에 關한 것 ② 傳染病豫防과 治療에 關한 것 ③ 汚物掃除와 清溪法 施行에 關한 것 ④ 種痘에 關한 것 ⑤ 埋葬, 屍體解剖에 關한 것 ⑥ 衛生에 關한 것 ⑦ 病院에 關한 것 ⑧ 救恤, 住居³⁵⁾에 關한 것 等이다.

1918年 3月 20日 現在 京城府 衛生係職制를 보면 韓國人은 한 명도 없고 日人이 모두 6名으로 當時 國費支給에는 府書記 1名, 府雇員 3名 및 府費支給이 2名이었다.³⁶⁾ 이들 職員外에 衛生係에는 日人 掃除監督員 4名(給料 172圓)과 掃除巡視員 11名(日人 7名: 給料 288圓, 韓國人 4名: 給料 72圓)이었다.³⁷⁾

京城府의 職制는 1916年 4월 1日부터 1936年까지 20年間 13回나 改定되었는바 1936年 3月 30日 京城府 衛生課의 業務內容을 要約하면 ① 衛生과 傳染病, ② 基地와 火葬場의 管理 ③ 屠畜·醫療器具·其他 衛生材料의 收納檢査等에 關한 것이다.

2. 環境衛生事業機構

1) 衛生組合

日帝 統治期부터 日本人 爲主의 衛生行政은 朝國人에게 抗日感情을 야기했던 結果를 초래했다 하여 衛生法規 준수지시 및 명령에 대하여 意識의 으로 짐짓 소극적인 態度를 견지하였었다. 어쨌던 日帝는 韓國人을 非衛生的인 民族으로 規定짓고 벌시를 일삼아 왔다. 이와같은 日帝 官憲의 衛生法規 준수의 強要로는 所期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京城府에서는 民間衛生思想普及이라는 啓蒙的 方法으로 傳染病豫防令, 獸疫豫防令 및 附屬法規의 施行을 촉진하였다. 朝鮮末期부터 漢城에 居住한 日人들은 各 町(洞)을 中心으로 스스로 組織한 衛生組合을 形成하고 있었는데 이 組合은 居留民團의 公共業務에 協助하고 또한 衛生問題를 自治의 으로 운영하여 傳染病이 流行할 때는 스스로 防疫活動을 벌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當時는 이러한 組織의 結成이 不可避한 것으로 여겨 만들게 되었고 1912年 京城에는 이러한 組合이 51個, 京畿道에는 101個가 있었다. 이 衛生組合의 構成員은 京城의 경우 日人이 대부분이었고 各地方에 있어서는 韓國人이 多數를 차지하였다. 同 組合의 組長은 선거로 뽑았으며 1917年 6月 面制의 實施로 隔離病棟, 우물, 屠殺場, 市場, 汚物清掃等의 施設과 業務가 地方 各面에 移讓되었다.³⁸⁾

2) 京城衛生委員會

京城衛生委員會가 組織된 것은 1915年 7月이었다. 同 委員會의 組織目的은 이른바 '朝鮮總督府 施政 5週年記念'으로 朝鮮物産共進會 (1915年 9月 15日~10月 31日)를 開催함에 따라 그 準備의 一環이었다. 이 會의 組織은 京城府, 京畿道, 鐵道局, 日本軍 및 警察等의 關係人과 醫師會長이 포함되어 있었다. 1915年 8月에 會議를 열고 衛生問題를 審議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傳染病早期發見: 巡察警官은 各 戶口의 發病

患者를 調査하고 醫師로 하여금 入院患者들의 可檢物 採取와 細菌檢査등을 實施함.

2) 下水道改修: 各 警察署別로 分擔하여 浚濬하고, 往十里·清涼里 일대도 高陽警察署로 하여금 浚濬케 함.

3) 公衆便所의 增設 및 補修: 設치장소는 京城府와 警察署가 協議해서 결정하고 公衆便所 13곳, 私設便所 11곳 모두 24個를 設치한다. 기존 42개는 보수하고 하루 3회이상 淸소를 실시하고 防臭劑 살포 실시.

4) 街路撤水: 大路는 京城府에서 계속 撤水하도록 하며 使用하는 물은 下水가 아닌 21곳의 임시 우물을 파서 地下水로 撤水하도록 함.

5) 共同水道: 上水道의 보급을 높여 우물 사용을 줄이고 市內 5개소의 無料 共同水道를 施設한다. 동시에 上京하는 地方民들에게 水道 관념을 높이고 우물물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汚染된 것은 사용하지 못하게 함.

6) 傳染病防疫: 각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順化病院 外에 靑坡洞의 舊 龍山隔離病棟을 수리한 후 收容토록 함.³⁹⁾

以後 審議委員들은 各 地區를 分擔하여 市民들이 衛生狀態를 살펴보도록 하고 警務總長은 京畿道 警察部長에게 衛生團束令을 내리는 外에 衛生 追更豫算을 편성하여 56,000圓의 防疫費를 支出하는 등의 措置를 취하므로써 日帝植民地 統治業績을 內外에 誇示하는데 總力を 경주하였다.

3) 朝鮮中央衛生會

이 機構의 設立目的은 工場, 學校, 水道等 점차 增設되는 公衆衛生에 關한 施設이 不充分하므로 이와 같은 施設의 計劃에 關한 事項을 審議할 中 樞機關의 必要性에 의해 1920年 7月 14日「朝鮮中央衛生會에 關한 規程」을 發布하고 政務總監을 會長으로 官民이 그 委員을 選任해서 公衆衛生에 關한 總督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1921年 10月 첫 總會를 개최하였다. 이에 中央衛生會의 設置와 同時에 傳染病及地方病의 調査研究 및 豫防에 關한 委員會를 設置하였다.⁴⁰⁾

4) 消毒事務所

合併以前의 消毒事務所는 韓國人은 漢城府에서, 日本人과 外國人은 各 居留民團에서 施行하였고 合併以後에는 消毒業務를 警察이 담당하였다.

1919年에는 總督府令으로 消毒經費를 地方公共團體에 支出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24年부터 京城에는 乙支路 5街 消毒事務所⁴¹⁾를 設置하고 有料消毒의 의뢰를 받았다. 即 建物規模, 物品器具類別, 藥品種類別로 區分하여 料金を 받았으며 의뢰하는 사람은 대부분 日人들이었고 韓國人도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당시의 경제 形편상 有料消毒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形편이었다.

3. 衛生警察制度

當時 朝鮮의 衛生事務는 一般政務와 共히 朝鮮總督이 統理하여 警察官署가 이를 執行하였다. 朝鮮總督府 警察官署 官制 第1條에 「朝鮮總督府 警察官署는 朝鮮總督의 管理에 屬하여 朝鮮에 있는 警察及 衛生의 事務를 掌함」이라고 하여 所謂 警察中에는 衛生警察까지도 포함하였는데 이는 植民地 朝鮮에서만 적용하였던 制度였다.⁴²⁾

過去 日本에 獨逸方式에 依한 醫事警察制度가 導入되기는 하였으나 日本에 있어서의 保健醫療行政의 基本은 이 醫事警察에 依한 取締에 두지는 않았었고 衛生局을 中心으로한 보다 포괄적인 意味의 保健衛生 및 醫療行政이었고 其中 一部만이 警察的인 要素가 介入⁴³⁾되었을 뿐이라고 할수 있는데 比해 朝鮮에서의 衛生警察制度는 武斷植民地 統治政策의 一面이었다. 當時 衛生警察의 概念을 보면 ‘公衆衛生上의 미치는 危害를 防除하는 國家의 權力作用으로 衛生은 우리들의 健康을 保全하는 作用을 하는 故로 이 作用에 미치는 危害를 물리치는 國家의 일꾼을 衛生警察⁴⁴⁾이라...’하였다.

한편 衛生行政을 內容別로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分類⁴⁵⁾하고 있다.

- 1) 保健行政: 都市衛生 例로 上, 下水道 除穢及 墓地 埋火葬에 關한 事項.
飲食物 其他 物品의 取締, 屠場에 關한 事項.
工場衛生에 關한 事項.
- 2) 豫防行政 一般的: 上水道, 飲食物, 住宅, 除穢에 關한 것.
特殊營業의 取締.
衛生思想의 啓發普及.
特定的: 傳染病豫防令.

海港檢疫.

種痘.

花柳病豫防.

癩病豫防, 結核豫防.

3) 治療行政: 醫師, 産婆, 看護婦, 入齒, 按摩, 鍼灸術者에 關한 것.

藥劑師, 藥種商, 製藥者, 賣藥者, 藥品, 賣藥等에 關한 것.

病院에 關한 것.

日帝末期 衛生警察과 一般警察의 保健衛生業務 分掌⁴⁶⁾은 다음과 같다.

衛生警察은 ① 醫師, 齒科醫師, 獸醫師 ② 按摩, 鍼灸士 ③ 産婆, 看護婦 ④ 藥劑師, 藥品, 賣藥 ⑤ 衛生試驗 ⑥ 傳染病豫防 ⑦ 種痘 ⑧ 癩病豫防 ⑨ 家畜病豫防 ⑩ 掃除 等이고

一般警察에 있어서는 ① 保安, 風俗 ② 飲食物 ③ 宿泊, 住居 ④ 墓地, 火葬場, 埋葬, 火葬 等이

다.

4. 保健衛生關係法規

日帝에 의한 朝鮮統治 初期부터 末期까지 施行된 保健衛生法規⁴⁷⁾를 衛生警察 및 警察擔當業務別로 整理해 보면 Table 6 및 Table 7과 같다.

1910년부터 1939년까지 약 30年間 日帝가 制定하여 公布施行한 保健衛生法規은 39個인바, 이는 環境, 食品衛生分野가 16件(41%)으로 가장 많았고 防疫, 醫事에 11件(28%), 獸醫 7件(18%) 및 其他 5件(13%)의 順이 있다.

1911年 5月 1日 警令 第6號 「理髮營業取締規則」⁴⁸⁾은 京成에서만 처음으로 實施하였다.

5. 施行된 事業

1) 衛生試驗所

警務局 衛生課에는 衛生試驗室 및 細菌檢査室⁴⁹⁾

Table 6. 日帝強占期 衛生警察所關 保健衛生法規

令 號 數	法 規	公布年月日
法律 第31號	汚物清掃法(全 11 條)	1900年 3月
制令 第8號	朝鮮汚物掃除令	1936年 6月
總令 第124號	朝鮮汚物掃除令施行規則(全 19 條)	1936年 12月
法律 第35號	種痘法(全 20 條)	1909年 4月
制令 第9號	朝鮮種痘令(全 3 條)	1923年 4月
總令 第76號	朝鮮種痘令施行規則(全 12 條)	1923年 5月
制令 第1號	港灣檢疫에 關한 件(全 5 條)	1911年 1月
制令 第2號	傳染病豫防令(全 20 條)	1915年 6月
總令 第2號	傳染病豫防令施行規則(全 45 條)	1928年 5月
制令 第61號	傳染病豫防令 第22條에 依한 地方公共團體의 義務에 關한 件(全 4 條)	1928年 5月
總令 第4號	肺結核豫防에 關한 件(全 10 條)	1918年 1月
總令 第60號	學校傳染病豫防 및 消毒方法(全 11 條)	1919年 8月4日
制令 第6號	朝鮮家畜傳染病豫防令(全 31 條)	1930年 7月
總令 第94號	朝鮮家畜傳染病豫防令施行規則(全 24 條)	1932年 9月
總令 第96號	移出牛檢疫規則(全 14 條)	1932年 9月
總令 第96號	鼻疽豫防上輸入馬의 檢疫에 關한 件	1932年 9月
總令 第12號	衛生試驗依賴規程(全 11 條)	1934年 2月
制令 第4號	朝鮮癩豫防令(全 12 條)	1935年 4月
制令 第62號	朝鮮癩豫防令施行規則(全 12 條)	1935年 4月
總令 第91號	家禽페스트의 豫防에 關한 件(朝鮮家畜豫防法令 中 家禽콜레라에 關한 規定을 適用함)	1937年 7月
制令 第9號	朝鮮牛結核豫防令(全 21 條)	1939年 7月
總令 第144號	朝鮮牛結核豫防令施行規則(全 33 條)	1939年 8月

資料: 朝鮮總督府, 朝鮮法令輯覽, 上卷, 1940. pp. 1~2

Table 7. 日帝強占期 警察所關 保健衛生法規

令 號 數	法 規	公布年月日
法律 第15號	飲食物 其他 衛生上 危險한 物品取締에 關한 件(全4條)	1900年2月
總令 第75號	宿泊 及 居住規則(全12條)	1911年6月
勅令 第272號	飲食物 1900年 法律 第15號 及 同年 法律 第30號의 一部를 朝鮮에 施行하는 件	1911年10月
勅令 第133號	衛生上 有害飲食物 및 有害物品取締規則(全11條)	1911年11月
總令 第134號	清涼飲料水 及 冰雪營業取締規則(全13條)	1911年11月
總令 第145號	清酒製造 또는 貯藏에 關한 것과 其他 添加 食鹽酸 使用限度內 衛生上 有害飲食物 及 有害物品 取締規則 第8條의 規程을 適用하는 件	1911年11月
總令 第346號	衛生上 有害飲食物 及 有害物品試驗方法	1911年11月
總令 第108號	衛生上 有害飲食物 及 有害物品取締規則 第9條, 清涼飲料水 及 冰雪營業取締規則 第10條에 依한 警務總長, 警務部長의 職權中, 警察署, 警察分署長 及 警察署의 事務를 取扱하는 憲兵分遣所의 長이 行하는 事項(全6項)	1912年6月
總令 第121號	메탈알콜取締規則(全8條)	1912年6月
總令 第123號	墓地, 火葬場, 埋場 及 火葬取締規則(全242條)	1912年6月
警令 第4號	湯屋營業取締規則(全10條)	1914年7月
警令 第1號	宿屋營業取締規則(全28條)	1916年3月
警令 第2號	料理屋 飲食店營業取締規則(全29條)	1916年3月
警令 第3號	藝妓의 婦 藝妓置屋 營業取締規則(全26條)	1916年3月
警令 第4號	貨座敷娼妓取締規則(全45條)	1916年3月
警令 第184號	屠場規則(全23條)	1919年11月
總令 第114號	朝鮮牛乳營業取締規則(全44條)	1935年4月

資料：朝鮮總督府，朝鮮法令輯覽 上卷，1940，pp. 1~2

Table 8. 衛生試驗件數

年度	藥 品			賣 藥			酒 類			牛 乳		
	適	不適	件	適	不適	件	適	不適	件	適	不適	件
1911	233	17	250	192	585	777	179	2,782	2,961	114	24	138
1912	215	43	258	3,925	1,692	5,617	404	154	558	58	8	66
年度	清涼飲料水及冰雪			其他 飲食物			食 器			着 色 料		
	適	不適	件	適	不適	件	適	不適	件	適	不適	件
1911	54	32	86	27	4	31	21	26	47	2	10	12
1912	60	17	77	128	31	159	25	40	65	52	68	120

資料：朝鮮總督府，朝鮮施政年報(1912)，1914，p. 365

을 附設하여 衛生試驗과 細菌檢査를 實施하였다. 이는 1913년부터 必要에 따라 京城에 그리고 各道에 衛生試驗所를 附設하여 1921년에는 全國에 設置完了 되었다.⁵⁰⁾

日帝強占 初期 및 中期의 衛生試驗件數 現況을 보면 Table 8 및 Table 9와 같다.

그 後 末期에 해당하는 1940年, 1941年 및 1942年度의 檢査件數는 各各 36,899件,⁵¹⁾ 34,727件⁵²⁾ 및 10,602件⁵³⁾으로 減少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2) 上水道

朝鮮總督府는 1911年 4月 1日 水道經營權을 京

Talbe 9. 衛生試驗件數

年度	藥 品			賣 藥			水			酒 類		
	適	不適	件	適	不適	件	適	不適	件	適	不適	件
1932	18,124	594	18,718	1,274	1,525	2,799	5,868	3,640	9,508	5,350	860	6,210
1933	1,664	563	2,227	2,029	1,512	6,541	9,448	7,248	16,696	4,752	702	5,454
1934	3,130	858	3,988	3,754	1,492	5,246	12,767	11,795	24,562	3,102	451	3,553
1936	5,536	1,097	6,633	2,304	1,830	4,134	12,936	5,638	18,574	4,624	778	5,402

年度	水, 氷雪, 清涼飲料水			飲 食 品 具			雜 類			計		
	適	不適	件	適	不適	件	適	不適	件	適	不適	件
1932	1,681	934	2,615	640	138	778	5,086	711	5,797	38,023	8,402	46,425
1933	3,248	882	4,130	1,590	145	1,735	4,995	550	5,545	27,726	11,602	129,328
1934	6,903	1,811	8,714	654	145	799	3,933	465	4,399	34,243	17,017	51,261
1936	22,033	16,539	38,572	2,731	548	3,279	4,405	1,247	5,652	54,569	27,677	82,286

資料: 朝鮮總督府, 朝鮮事情(1933), 1934, p. 224
 _____, 朝鮮事情(1935), 1936, p. 239
 _____, 朝鮮事情(1937), 1938, p. 274
 _____, 朝鮮事情(1938), 1939, p. 292

畿道長官에게 委讓하였다가 1922年 3月 31日, 水道の 經營權은 京畿道로부터 無償으로 京城府에 讓與되었다함은 前述하였거니와 以後 光復時까지 京城府 管理下에 있었다.

이 官營水道에 對하여 1916年 10月 總督府令 第 108號로서 發布한 「給水規則」에 依하면 그 目的과 給水方法에 따라 5種으로 區分하였다.

第1種은 專用水道: 專用栓으로 計量方法에 依하거나 또는 計量方法에 依하지 않고 一戶 또는 一個所用에 供하는 것.

第2種은 私設共用給水: 私設共用栓으로 計量方法에 依하지 않고 二戶以上用에 供하는 것.

第3種은 官設共用給水: 官設共用栓으로 計量方法에 依하지 않고 二戶以上用에 供하는 것.

第4種은 船舶用給水: 官設特定栓으로 計量方法에 依하여 船舶用에 供하는 것.

第5種은 消火用給水: 消火栓으로 消防用에 供하는 것⁵⁴⁾ 등으로 區分되어 있었다.

水道의 狀態, 기타 事情에 依하여 必要할 때는 水道를 指定하고 專用給水 또는 私設 共用給水を 計量方法에 依하여서만 給水하였다.

1916年 3月末 地域別 上水道 施設現況을 보면 Table 10과 같다. 給水戶數는 京城, 平壤, 釜山의 順位로 많았으며, 給水戶數百分率은 平壤, 會寧,

釜山의 順이었고 1日平均給水量은 京城, 釜山, 平壤의 順으로 많았다.

京城府에 있어 年度別 給水普及率의 趨勢를 보면 Table 11과 같다. 1912年에서의 上水普及率은 31%에서 1922年 39%, 1934年에 53% 및 1937年에 49%로 前年度에 比해서는 약간 떨어지나 대체로 增加하는 傾向을 나타낸 反面 井戶水 또는 河川水의 使用率은 1912年에 69%이던 것이 점차 減少하여 1937年에는 51%로 低下되었다.

1927年에서 1929年까지는 全國에 30個 上水道 施設이 있었고, 1931年에는 33個所, 1932年 34個所⁵⁵⁾였던 것이 1937年에는 府, 邑, 面을 合해 63個所 增加하였고, 1941年 現在 21個府에 21個所, 114 邑中 49個所, 기타 郡所在地 및 面等에 9個所 都合 79個 上水施設⁵⁶⁾이 設置되었다.

그러나 施設의 增加와는 別途로 上水惠澤을 받는 者가 누구인가를 分析해 볼 必要가 있겠다. 1914年度 京城과 仁川府에 있어 國籍別 水道使用者 比率과 1925年度 京城府의 國籍別 給水 使用率을 보면 各各 Table 12 및 Table 13과 같다.

Table 12에서와 같이 京城의 경우 上水使用者의 比率은 日本人이 57.9%, 朝鮮人 40.8%였으며, 使用戶數에 對한 日本人 64.8%, 外國人 45.2%인 반면 朝鮮人은 19.2%로 낮았으며 仁川府에 있어

서도 日本人의 使用率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1925年度 京城의 경우 上水普及率은 日本人 89.9%, 朝鮮人 29%로 더욱 그 範圍가 커졌음을 보아

衛生施設의 直接的인 惠澤은 極히 部分的이었다고 斷言할 수 있다. 1925年, 1934年度 京城의 1人 1日 平級給水量은 各各 68l 및 81l이었다.⁵⁷⁾

Table 10. 地域別 水道概況

(1916年 3月末 現在)

都 市	給水戶數	給水戶數百		給 水 栓 水				計	1日平均給水量(立方尺)
		分率(%)	專 用	共 用	消 火 栓	船 舶 給 水 栓			
京 城	17,087	31.02	4,322	1,769	564	—	6,665	348,304	
仁 川	2,952	39.73	1,296	346	209	1	1,852	95,657	
平 壤	6,577	62.47	1,590	449	233	—	2,272	120,745	
鐵 南 浦	1,070	21.94	229	77	64	1	371	10,170	
釜 山	5,718	42.55	1,107	434	211	4	1,756	130,217	
木 浦	947	29.23	310	94	48	1	453	14,006	
羅 南	307	30.52	—	18	9	—	27	389	
會 寧	486	47.76	16	10	4	—	30	2,335	
鐵 海	111	8.40	—	31	29	—	60	4,287	
群 山	521	22.58	146	44	74	1	265	3,118	
元 山	1,006	19.48	179	65	100	4	384	15,709	

資料：朝鮮總督府，朝鮮施政年報(1915)，1917，pp. 326~327

Table 11. 京城府年別給水普及率

年 度	總人口	給水區域內		給 水 使 用		井戶 또는 河川水使用		上水普及率B/A(%)	井, 河川水使用率C/A(%)
		戶 數	人口(A)	戶 數	人口(B)	戶 數	人口(C)		
1912	297,738	55,235	251,102	18,033	78,442	37,202	172,660	31	69
1922	271,414	59,686	271,414	24,206	105,149	35,480	166,265	39	61
1934	394,511	98,942	478,996*	54,145	252,102	44,797	226,894	53	47
1937	706,396	144,252	706,396	71,705	344,041	72,547	362,355	49	51

資料：서울特別市，서울六百年史 第四卷，1981，p. 412에서 再構成 引用

*：總人口보다 給水區域內 人口가 더 많은 이유는 給水區域을 行政區域外까지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닌 가 생각됨

Table 12. 京城, 仁川의 國籍別 水道使用者 現況 (1914)

都 市	國 籍	上水道使用戶數		使用者에 對한 比率(%)	當時總戶數	總戶數에 對한 給水使用者 戶數比率(%)
		上水道使用戶數	上水道使用戶數			
京 城	朝 鮮 人	7,299	7,299	40.8	38,094	19.2
	日 本 人	10,347	10,347	57.9	15,962	64.8
	外 國 人	238	238	1.3	527	45.2
仁 川	朝 鮮 人	798	798	27.2	3,969	10.6
	日 本 人	2,138	2,138	72.8	3,069	28.4
	外 國 人	—	—	—	—	—

資料：朝鮮總督府，京城, 仁川 水道事業統計表(申東源，日帝의 保健醫療政策 및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p. 189. 再引用)

Table 13. 給水使用者의 國籍別 分布

年 度	給水區域內總戶數				給 水 戶 數				普及率(%)		
	計	朝鮮人 (A)	日本人 (B)	外國人 (C)	計	朝鮮人	日本人	其他外國 人(F)	(D)/(A)	(E)/(B)	(F)/(C)
1925	67,530	47,116	19,442	972	32,088	13,688	17,476	921	29.0	89.9	99.9

資料：京城府，京城都市計劃資料調查書，1927，p. 192 (서울特別市，서울六百年史 第四卷，1981，p. 413에서 再引用)

3) 下水道

京城에서 下水道의 改修事業은 總督府의 下水道 改修調査實施後 1918年度에 이르러 第1期 下水道改修計劃이 수립되어 1924년까지 7年間に 162萬圓을 들여, 排水幹線인 淸溪川의 浚濬과 함께 排水不良한 17個 支線을 改修하여 그 延長 길이는 開渠가 13,115m, 暗渠가 4,691m, 計 17,805m였고, 第2期 1925년부터 1931년까지 7個年間 總事業費 121萬圓(國庫補助 585,000圓, 府費 625,000圓)을 투입 新橋洞~都染洞間 幹線을 포함한 7個 幹線과 社稷洞~都染洞間 支線을 포함한 6個 支線의 管渠 12,377m와 이에 따르는 附帶施設로 되어 있다. 또한 舊龍山 排水計劃事業에서는 1921年에서 1923年 3個年 事業으로 總事業費 42,000圓(國庫補助 210,000圓, 地方費補助 20,000圓, 府費 190,000圓)이 所要되었으며 第3期 事業은 1933~1936년까지 4年間に 걸쳐 시행되었는데 總 299,413圓(國庫補助 149,708圓, 府費 149,707圓)이 투입되었으며 第4期는 1937~1943年 7年間 173,389圓(國庫補助 3,756圓, 府費 169,633圓)이 투입되었고 그外 府費 負擔下水道 事業은 1921~1937년까지 17年間に 1,062,349圓으로 開渠 69,516m와 暗渠 49,912m, 計 119,428m를 改修하였다. 總括的으로 보면 第1期부터 第4期, 龍山排水 및 府費負擔 下水事業等の 總額은 4,748,455圓中 國庫가 1,608,762圓으로 33.9%, 地方補助費가 305,000圓으로 6.4%, 府費가 2,834,693圓으로 59.7%를 차지하였으나 1938年度에는 下水道 受益者負擔金⁵⁸⁾도 징수하였다.

4) 汚物清掃事業

京城府制 實施 後에는 家戶마다 쓰레기통을 備置하도록 감독과 순시를 하고 區間을 정해 쓰레기를 收去한 뒤 都城밖 指定된 處分場에 投棄하였

다. 한때 漢城衛生會에서 쓰레기 燒却爐를 설치하였으나 土砂가 많이 섞여 중지하였다. 夏節期에는 태우고 冬季에는 肥料를 만들었다. 冬季 製造肥料는 加理肥料를 만들어 한포대 30錢씩 판매하여 市收入으로 하기도 하였다. 그 收入金은 1914년에 35圓, 1915년에 646圓, 1916년에 942圓, 1917년에 1,471圓을 記錄하였다. 그리고 1日 쓰레기 처리량은 1932년에 7萬貫, 1938년에 8萬貫, 末期에는 30萬貫이 되어 廢品再生利用과 덜 버리기운동이 強要되었다.⁵⁹⁾

한편 糞尿도 쓰레기와 함께 큰 社會問題였다. 都城內 糞尿는 近郊農民들이 牛馬車를 利用 無料로 收去하여 肥料로 使用하였으나 그 時期가 一定치 않아 都市衛生에 不便은 큰 問題가 되었다.

그 後 1910年頃 獨立門 밖과 그 後 阿峴里 高地 남에(阿峴 1洞 配水池 西側下方) 임시 糞尿處分場을 設置하였는데 이는 高地帶였으므로 이곳에서 麻浦江까지 管을 묻고 糞尿를 自然落差에 의해 흘러보내 船舶에 실어 인근 農村에 肥料를 供除하였다는 記錄이 있고 1925年 7月 10日 東亞日報에서 5萬石 콘크리트 탱크 貯溜池에 경비는 20萬圓 예산이 성안되면 실행되라는 報道記事가 있다.⁶⁰⁾ (筆者註：阿峴里 콘크리트 糞尿탱크는 1955年頃까지 있었으나 既存 糞尿重量에 의해 老朽 破損되어 인근 住宅地로 덮쳐내려 무너져서 그후 糞尿탱크를 모두 埋沒하여 住宅地로 開發하였음).

光熙門밖 處分場은 東大門밖 龍豆里(東大門밖 6km)에 移轉하고 東大門에서 處分場까지는 14萬圓을 投資해서 1927년에 軌道를 敷設하고 流送設備는 1928年 7월에 竣工하였다.⁶¹⁾ 또한 漢江麻浦要鳥의 處分場도 孝昌洞으로 統合하였고 이는 다시 二村洞 處分場(새남터 부근)으로 옮겼다.

1918年 糞尿排出量은 1日 800石에 250名의 人夫

가 고용되었고 1925년에는 1日 1,200石, 1941년에는 1日 3,044石으로 增加하여 트럭 10台, 馬車가 250台, 300名의 人夫가 고용되었다. 1927年 京城 肥料會社⁶²⁾가 판매를 담당하다가 中繼하기도 하였다. 1935年 6月부터 京城府에서는 戶別稅를 부과할 때 糞尿取扱 手數料를 징수하여 總歲入中 約 6萬円을 汚物處理와 上下水道改修等 都市衛生施設 改設事業費로 使用하였던바 이는 汚物稅⁶³⁾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1913年에서 1935年까지 京城府 糞尿取扱狀況을 보면 Table 14와 같다.

Table 14. 京城府糞尿取扱狀況

年 度	汲取延戶數	汲取延人夫	運搬車延 台 數	汲取量(石)
1933	2920666	31934	114753	534664
1934	2980916	34099	132672	627730
1935	2884946	36672	141086	663540

資料：서울特別市, 糞尿行政現況과 將來對策, 1963, p. 3

IV. 美軍政時代

1. 衛生行政職制

1945年 8月 15日 日帝의 無條件 降伏은 獨立國으로서의 統一로 이어지지 않고 南北分斷과 함께 南韓地域에 美國軍隊 依한 軍政統治가 始作되었다. 따라서 美國式 衛生行政이 助長行政 側面⁶⁴⁾에서 移殖되게 된다.

1945年 9月 24日 美軍政法令 第1號「衛生局設置에 관한 件」⁶⁵⁾을 公布하여 從前의 警務局 衛生課를 廢止하고 衛生局을 設置하여 警務局 衛生課가 行한던 義務와 職務를 行케 하고 警務局 衛生課의 모든 資金과 文書와 財産을 衛生局으로 移屬케 하였다.

同年 10月 27日⁶⁶⁾ 法令 第18號로 衛生局을 廢止하여 保健厚生局을 設立하고 衛生局의 職務를 遂行함과 同時에 ① 事變과 災害의 救濟 ② 常續의 貧困한 者의 公共救助 ③ 小兒의 厚生과 其他 必要한 保護 ④ 從業人의 厚生과 恩給制度 ⑤ 住宅問題 ⑥ 官房事務課와 協力하여 歸國及 失業한 朝鮮人의 保護及 歸鄉 ⑦ 其他 朝鮮內 占領軍의 目

的達成에 必要한 公共 厚生計劃及 經營等의 業務를 보게 되었다.

同年 11月 7日 法令 第25號로 「各道保健厚生部設置」⁶⁷⁾件에 의해 道廳內에 保健厚生部를 두고 다음과 같은 業務를 보도록 하였다. ① 道民의 健康研究, 保護及 增進 ② 保健教育 ③ 流行病學 豫防藥及 傳染病防止 ④ 母子保健 ⑤ 病院과 診療所 ⑥ 看護一般 ⑦ 獸醫一般 ⑧ 齒科一般 ⑨ 衛生施設 ⑩ 實驗所 ⑪ 藥務 ⑫ 人口統計 ⑬ 應急及 災難救濟 ⑭ 極貧者에 對한 公共扶助 ⑮ 小兒厚生及其他施設의 管理 ⑯ 從業員厚生 急 恩給制度 ⑰ 住宅 ⑱ 歸還及 失職同胞의 保護及 安住 ⑲ 朝鮮駐屯軍 目的達成 援助에 必要한 其他 一般公共厚生의 計劃이고 獸醫事業을 監督, 指導하기 爲하여 保健厚生局에 獸醫課를 두었다. 따라서 學務局 社會課, 警務局 防護課 戰災民係, 官房外 事務課保護係, 鑛工局의 勞務課及 戰災民 救護會는 保健厚生局에 移轉되었다.

다음해인 1946年 2月 19日 法令 第64號로 軍政廳 各部署 機構改革時 保健厚生部⁶⁸⁾로 昇格 改稱케 되어 軍政廳 各部署中 最大의 部가 되었다.

그 機構를 보면 衛生局, 豫防醫學局을 포함하여 15局, 47個課에 이르렀으며 同年 10月 23日에 道機構의 改革으로 道厚生局에 衛生施設課, 豫訪醫學及 生活課를 포함해서 6個課를 두었다.⁶⁹⁾

그 後 美軍政權을 점차로 韓國人에게로 行政權을 넘겨 주게 됨에 따라 南朝鮮過渡政府가 樹立되자 以上의 中央의 尙大한 機構를 簡素化하여 豫防醫學局⁷⁰⁾, 厚生局을 합쳐 다시 7個局으로 縮少하였는데 衛生課는 豫訪醫學局 아래 두었다.

當時 公布된 衛生關係法令으로는 1947年 8月 25日 保健厚生部令 第2號로 公布된 「海空港檢疫規則」全32條가 있고 1948年 1月 23日 法令 第163號로 「水産食品及 그 施設衛生規格」全10條 등이 있다.

2. 衛生檢査와 免許

1945年 11月 京城府 保健厚生局 衛生課에서는 保健講習所를 設置하고 衛生監督을 하기 爲해 第1回 入所生을 50名으로 定하여 保健衛生에 關한 教育을 實施하였다. 1946年 2월에 理髮館, 美容院, 牛肉商의 衛生業務는 서울市 衛生課로 移管하였

다. 同年 5月 13日에는 軍政法令 第83號로 「公設浴場 및 飲食店免許에 對한 發表」로 衛生檢査, 公設浴場의 免許, 料理 또는 無酒精飲料販賣業의 免許에 關한 警務部 各 管內의 모든 職能, 職務를 道 保健厚生部에 移管하였다. 同年 8月 15日에 京城府를 서울시로 改稱하고 特別市로 昇格하는 「서울市憲章」을 發表하였는데 保健衛生에 關한 事務도 獨自의로 施行하게 되었다. 從來 警務部의 所管 業務였던 料食業에 關한 一切의 事務가 서울시 衛生課에서 各 區域別로 免許證을 交付하였다. 또한 衛生營業許可權이 內務部長官으로부터 서울市場 및 各 郡守에게로 移管되었다. 1948年 서울시는 市內 飲食店에 對한 正式 衛生調查를 처음으로 實施하였다.⁷¹⁾

V. 政府樹立과 그 以後

1. 衛生行政職制

1948年 7月 17日 政府組織法이 國會를 通過하여 美軍政으로부터 勞動局 및 保健厚生部는 먼저 大韓民國政府에 移讓⁷²⁾되고 8月 16日부터는 美軍政의 政權移讓業務가 進行되었다.

同年 8月 15日 大韓民國이 樹立되어 法律 第1號로서 政府組織法이 公布됨에 保健厚生部는 없애 지고 社會部職制가 11月 4日 大統領令 第25號로 改編되어 保健局 外 5個局이 新設되어 여기 保健課 아래 衛生施設係가 있었다.

한편 同年 11月 18日에 公布된 地方行政機構職制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社會局 아래 衛生課를 두었으나 各道에는 社會局 아래 衛生課를 두어 中央機構職과는 어울리지 않는 行政體系가 되었다.⁷³⁾

1949年 7月 25日 大統領令 第141號로 保健局을 廢止하고 同日字로 大統領令 第150號로 保健部를 新規定하여 防疫局에 保健課, 衛生課, 豫防課 및 地方病課를 두게 된다. 1950年 3月 31日 防疫局에 保健課, 衛生課, 豫防課의 3課로 改定하고 同年 10月 18日 大統領令 第387號로서 衛生課의 業務는 上下水道, 清掃, 食品衛生, 衛生施設, 理美容士, 接客營業 및 驅蟲, 驅鼠에 關한 事項을 管掌하게 된다.

그러나 1950年 10月 17日 衛生關係 및 接客營業 行政은 當時의 社會秩序와 오랜 植民地의 統治 勢

圍氣를 벗어나지 못한 點 그리고 警察當局의 時流 便乘傾向으로 衛生行政은 당분간 警察權下에 運營되어야 한다는 主張으로 接客營業 및 清掃에 關한 行政事務 一切를 內務部로 移管掌한다는 內務部長官의 發表에 따라 同年 10月 18日 內務部職制를 고쳐 衛生警察制를 復活 衛生警察로 改稱하였다. 따라서 그 行政體系를 보면 서울特別市 및 各道 警察局 保安課에 衛生係가 있었고 또한 警察署 保安課 衛生係에 營業班과 清掃班을 두어 衛生行政이 警察行政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保健醫療關係人과 識者들의 反對와 輿論에 따라 1950年 8月 25日 大統領令에 依해 다시 保健部로 移管⁷⁴⁾되었다.

1955年 2月 17日 大統領令 第1004號, 法律 第354號로서 政府組織法의 改定으로 保健部는 社會部를 吸收하여 保健社會部로 改稱 公布되어 醫務局, 防疫局, 藥政局을 포함 6個局이 있어 防疫局에 保護課, 衛生課 및 豫防課를 두었는데 衛生課에서는 上下水道, 清掃, 食品衛生, 衛生施設, 理容士, 接客營業 및 驅蟲, 驅鼠에 關한 業務를 보게 되었다.⁷⁵⁾

그러나 먼저 1953年 12月 14日 大統領令 第843號 「清掃 및 接客業의 事務管掌에 關한 臨時措置令」에 따라 內務部長官 監督下에 오랜기간 놓여 있다가 1960年 10月에 와서야 正式으로 內務部에서 保健社會部로 移讓되었다.⁷⁶⁾

2. 衛生檢査機關의 統合

1963年 12月 16日 閣令 第1716號에 따른 國立保健院職制는 既存 保健研究機關인 國立保健院, 國立防疫研究所, 國立化學研究所 및 國立生藥研究所 等 四個 機關이 統合된 것이다.⁷⁷⁾

統合以前의 國立保健院은 1935年頃 朝鮮總督府의 保健員養成所에서 保健看護業務에 從事할 婦女要員의 教育訓練을 實施하다가 1949年 7月 14日 中央保健所로 되었으며 1953年 여기에 公衆保健院을 開設하여 醫師 및 保健要員의 教育을 시켰으며 保健所要員의 短期教育도 實施하였다.

國立防疫研究所는 1912年 10月 1日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警察局 衛生課에 細菌室을 設置하였는바 1920年 8月에 同 傘下 細菌檢査室로 改稱되었으며 1943年 警務局 直屬 細菌檢査所로 改稱되

Table 15. 食品衛生業務處理要領

號	件	名	制定公布年月日
保防 第 23 號	清涼飲料水 및 食料加工品	衛生行政取扱 要領	1950 年 2 月 18 日
" 第 663 號	水菓營業, 衛生事務取扱 要領		" 5 月 6 日
" 第 670 號	衛生上 有害飲食物 및 同物品	團束 要領	" 5 月 9 日
" 第 811 號	製飴營業, 事務取扱 要領		" 6 月 12 日
" 第 137 號	肉類販賣營業, 衛生事務取扱 要領		" 11 月 29 日
" 第 151 號	料食營業, 事務取扱 要領		1951 年 9 月 6 日
" 第 345 號	製菓營業, 事務取扱 要領		1952 年 2 月 29 日
" 第 346 號	飲食物營業所	衛生狀態査定規準	" "

資料：國立保健院，保健事業評價調查備調查報告書，1961, pp. 518~519

있고 1945年 光復 直後 朝鮮防疫研究所로 改稱되어 同年 10月 27日 美軍政時 衛生局을 保健厚生局으로 바꾸면서 國立防疫研究所로 되었다가 1949年 12月 7日 다시 中央防疫研究所로 改稱되었다 (1960年 8月 12日 다시 國立防疫研究所로 하였다).

國立化學研究所는 1910年 9月 朝鮮總督府 警務總督部는 警務局 衛生課의 附設機關으로 衛生試驗室이 생겨 1928年 衛生試驗所로 改編되고 1943年에 防毒檢定所를 併設하였고 同年 營養調查委員會를 組織하였으며 1945年 9月 24日에 衛生局이 設置되면서 國立衛生試驗所로 改稱되었다. 그러나 1949年 11月 7日 國立을 中央으로 變更하였다 (1960年 8月 12日 다시 國立化學研究所로 됨).

中央生藥試驗場職制는 1954年 1月 18日로 公布되어 1960년 8月 3日 國立生藥試驗所로 改稱하였다.

3. 施行事業實績

1) 食品衛生

政府樹立 以後에도 保健衛生關係法令은 1950年代까지 舊 1900年代 以後에 制定된 關係法令에 依하여 取締監督을 適用 實施하였다. 그러나 食品衛生處理要令만이 Table 15와 같이 部令, 規則, 要領에 따라 業務를 取扱하였다.⁷⁸⁾

한편 1949年 서울特別市로 승격됨과 동시 京城市 衛生試驗室은 衛生試驗所로 改稱되어 保健衛生에 關한 諸般 檢査를 科學的인 方法으로 實施하였으며 1955년에는 市內 共同우물의 水質檢査結果 51%가 不適當한 것으로 判定되었다. 또한 市

行政當局에서 收去한 試驗對象 食品等を 檢査하여 有害有毒 如否를 判定 通告하였으며 市民의 의뢰가 있을 경우 檢査 수수료를 받고 有害食品에 對한 事前 判定을 하여 保健衛生發展에 큰 기여를 하였다.⁷⁹⁾

2) 上水道

1945年 全國에는 83個所의 上水道施設이 있었으며 消毒劑로는 美國의 援助에 依存한 液體 鹽素를 導入하여 各 水源池에 供給해서 0.2~1.0ppm 程度의 殘留 鹽素濃度를 維持하고 있었으나 鹽素 注入器의 不備等으로 不充分한 곳이 많았다. 當時 全人口의 約 87%程度가 既存 井戸水에 依하였으며 漂白粉을 美國援助로 導入해서 各 道에 配定 하였다.⁸⁰⁾

한편 光復 當時 서울의 上水道 水源池는 독섬, 鷲梁津 및 日帝末期 施設인 九宜水源池가 있었는데 이 3個 水源池에서의 生産量은 95,700m³/日이었고 給水普及率 77.5%, 1人 1日 平均給水量은 59l⁸¹⁾에 不過하였다.

1945年 總給水栓數는 61,970個, 1946年에 63,028個, 1947年 및 1948년에는 各各 62,855個, 64,908個였으나, 6.25動亂 以後 1955년에는 使用不能 18,608個를 舍해서 62,545個⁸²⁾였다.

1945年 以後 서울市の 給配水量 및 普及率을 보면 Table 16 및 Table 17과 같다.

Table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給水量 推移는 1945年 1人1日 平均給水量이 50l이었던 것이 1946年, 1947年, 1948年에 各各 56l, 57l, 및 53l로 줄어든 것은 人口의 都市集中에 의한 給水人口의 增加로 인한 給水人口의 增加率이 給水量을 앞질렀기

Table 16. 서울시 配水量 및 給水量 現況

區 分	年 度				
	1945	1946	1947	1948	1959
給 水 人 口	856,400	963,400	1,065,360	1,232,620	970,028
年 間 配 水 量(m ³)	30,363,042	31,332,878	36,117,010	36,142,533	83,408,468
年 間 給 水 量(m ³)	18,562,456	19,637,183	22,281,194	23,794,470	31,377,235
* 1 日 平 均 配 水 量(m ³)	83,186	85,843	98,951	99,021	228,516
* 1 人 1 日 平 均 給 水 量(l)	59	56	57	53	89

資料 : 서울特別市, 서울六百年史 第五卷, 1983, p 776

* : 計算誤謬를 바로 잡음

Table 17. 서울시 配水普及率 現況

區 分	年 度					
	1945	1946	1947	1948	1954	1957
給 水 戶 數	128,690	134,237	135,943	144,681	142,540	218,807
區 域 內 人 口 數	1,105,390	1,287,092	1,467,550	1,707,462	1,238,287	1,671,104
給 水 戶 數	93,011	109,342	110,262	124,238	50,786	78,849
人 口 數	856,400	903,163	1,065,360	1,232,620	414,981	1,088,230
普及率 戶 數 (%)	72.3	91.4	81.1	85.8	35.6	36.0
人 口 數 (%)	77.5	70.2	72.6	72.2	33.5	65.1

資料 : 서울特別市, 서울六百年史 第五卷, 1983, p 775.

때문이다. 그러나 1959年度에는 89l로 好轉되었다.

한편 Table 17에서와 같이 給水普及率은 人口數로 보면 光復當時 77.5%였으나, 1946년에 70.2%, 1947년 72.6%, 1948년 72.2%로 別 變動狀況이 없었으나, 6.25以後 政府還都後인 1954年度에는 33.5%로 떨어졌다가 그 後 3年 後인 1957년에는 65.1%로 增加하였다.

3) 下水道

光復後 政府가 樹立되고 ECA에 의한 國家健設事業이 착수되었으나 下水道事業에는 손을 쓰지 못했지만 서울 淸溪川 浚濬事業을 들 수 있는데 大廣橋에서 이르는 3,240m 區間을 浚濬하였는바 1949年 9月 30日에 着手하여 1950年 5月 中旬에 마침으로 河床을 확보하는데 投入된 事業費는 7,490萬圓이었으며 土量은 103,493m³였다. 또한 1954年 ECA 援助에 依한 惠化洞 地內 下水道改修工事を 비롯한 5件에 4,028,110圓이 投入되었으며 그 後 淸溪川 覆蓋工事は 1957년부터 1961年까

지 4次에 걸쳐 全長 2,358.5m區間을 完全 覆蓋하는데 總工事費는 16億 6,710萬圓이었다.⁸³⁾

4) 汚物淸掃事業

都市 糞尿는 全部 農村에 還元되어 肥料로 使用하였으며 非需要期에 利用할 糞尿貯藏탱크는 1955年 以來 全國에 130餘個가 設置되어 있었다.⁸⁴⁾

서울市の 경우 日帝때 淸掃施設 裝備인 淸掃用 自動車 100餘台 牛馬車 300餘台로 約 30萬貫의 塵芥와 3,000石의 糞尿를 처리하여 왔는데 當時의 淸掃事業은 서울特別市 保健衛生局 衛生課 所管으로 直營制로 운영되었다. 1950年 6.25事變으로 1953年 9月 政府還都時까지는 汚物處分 問題는 심각하였으며 1951年 서울을 收復한 후 淸掃裝備를 보충하기 위해 韓國民事援助處 衛生課(KCAC)에 의뢰하여 每日 20台의 淸掃用 車輛의 動員을 얻었으나 이것만으로는 不可能하였다. 1953年 當時 糞尿收去用 車輛 30台, 農牛馬車 500台와 塵芥收去用 民間人 徵發車 20台, KCAC車輛 15台 및 市警

保有車輛 18台 等 53台였다. 1945년에는 쓰레기
收去를 위해 各 洞마다 清掃奉仕班을 組織하였다.
85)

1953年 12月 서울市 保健衛生局 衛生課에서 管
掌해 오던 清掃業務를 當時 李承晚 大統領이「衛
生事務取扱에 對한 戰時非常措置令」에 의거 서울
市 警察局 保安課에서 保社部로 移管⁸⁶⁾ 되었다가
1960年 6月 10日 衛生業務가 內務部에 保社部로
移管됨과 同時에 서울市 社會局에서 管掌하게 되
었다⁸⁷⁾ (Table 18參照).

1954年 糞尿汲取에 對한 桶數制 收去料 制度를
止揚하고 人頭稅(汚物稅)制度로 賦課徵收한 바
있으나 徵收成績이 極히 저조하여 3個月 實施後
廢止하고 다시 汲取桶數制로 還元되었다.⁸⁸⁾

1945년부터 1968년까지 서울特別市 塵芥 및 糞
尿處分行政에 對한 事業沿革은 Table 18에서 보
는 바와 같다.

한편 汚物處分方法에 있어서는 塵芥의 경우 各
區廳別로 低濕地帶 所有者와의 契約에 依하여 適

格地를 選定하여 거의 全量 埋立方式에 依하였으
며⁸⁹⁾ 糞尿에 있어서는 거의 全量 서울近郊 農村에
보내져 肥料로 使用되었으며 特히 夏冬節 非需要
期 約 7個月間에 糞尿終末貯藏탱크가 容量不足이
면 一般農家 및 果樹園 等に 賣却하기도 하였다.
糞尿貯藏탱크는 1963年 當時 9個所, 1968年 12個
所가 있었는데 前者의 경우 城東區 篤섬에 있는
것과 廣州郡 九川面에 있는 것만 光復後에 新設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倭政期⁹⁰⁾에 設置 또는 施設
中에 있었다. 그 外에 西大門區 阿峴洞과 東大門
區 龍頭洞 所在 탱크는 撤去埋沒에서 住宅地로 化
하였다.

糞尿貯藏탱크의 所在地와 容量은 Table 19,⁹¹⁾
Table 20⁹²⁾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편 都市汚物의 衛生的이고 科學的인 處理方
式으로 有機性 塵芥를 原料로 하여 高速堆肥化法
에 의한 有機肥料를 生産할 目的으로 政府에서는
1953年 8月 142,600\$를 當時 東洋有機肥料株式會
社(龍山區 二村洞 새남터부근)에 融資하여 諸般

Table 18. 서울特別市 清掃事業沿革

年度	共 通 關 係	塵 芥 關 係	糞 尿 關 係	主管機構
1945	日帝時的 裝備를 引受 自動車 100 餘台 牛馬車 300 餘台	直營制	直營制	保 健 衛 生 局
1948	市財政에서 補償金 支出	委託代行制 各 區에 1 名	委託代行制 · 4區(鍾路, 中區, 龍山, 東大門) · 餘他周邊區는 實需要者 가 任意收去處理	"
1951	1950. 6. 25 動亂以來	K, C, A, C에 依賴	每日 委託代行制	"

* 京城府에서 當時 60萬 人口의 糞尿를 自然落下式으로 施肥處分한 目的으로 1930年頃에 麻浦, 靈泉, 彌阿里, 三個
方面으로 糞尿管을 埋設하였는바, 當時 竣工後 設計 및 施工不充分으로 所期의 目的을 기하지 못하고 放置되었었
다. 이는 收去한 糞尿를 탱크에 投入하여 中間탱크에 이르러 附近田畠에 施肥用으로 使用하고 나머지는 終點탱크
에 까지 보내어 다시 인근 농촌에 處分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實際로 使用한 事實은 없이 放置되었었다. 施設區間
및 場所를 보면 第1路線은 麻浦區 阿峴洞 投入탱크 始發 新水洞 中間탱크 經由, 舊木洞間 全長 2,900m(推定)이
고, 第2路線은 市內 西大門區 峴底洞 靈泉고개 投入탱크 始發 大棗洞 中間탱크 經由 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舊把
發里 終點탱크까지 全長 8,000m이며, 第3路線은 城北區 敦岩洞 彌阿里 高개 投入탱크 始發 水谿洞 中間탱크 經由
京畿道 楊州郡 盧海面 道峰區 終點탱크까지 全長 1,500m였다. 糞尿管의 口徑은 12吋~10吋이며 長 2m의 防水防
腐의 材質로 되어 있었다. 第1路線은 光復前까지 使用한 事實이 있고 나머지는 施設不充分으로 使用不可하여 補
修한 事實없이 無管理狀態로 放置되었었다.

年度	共通關係	塵芥關係	糞尿關係	主管機構
	1953. 9 政府遷都時가지는 首都의 機能을 喪失한 變態的 時期	自動車 20 台	• 4區(鍾路, 中區, 龍山, 東大門) • 餘他周邊區는 實需要者가 任意收去處理	
1953	衛生事務取扱에 關한 戰時非常措置令에 依據 53. 12. 4 保社部에서 內務部로 移管	併合隨意契約代行制 塵芥車 53 台 民間徵發 20 台 K.C.A.C補助 15 台 市警保有 18 台	併合隨意契約代行制 糞尿車 30 台 民間車輛 賃貸使用 鍾路, 中區, 龍山을 除外한 周邊地域은 牛馬車 500 台 動員 桶數制收去手數料 收入으로 收去作業費 自給自足 (桶當 30 환)	警察局
1955	55. 10 G.M.C. 108 台 導入 配定 塵芥 40 台 糞尿 68 台 新規車輛配定과 同時代行 經費調節로 公課金 台當 10 萬환 納入糞尿代行制 利權化 激甚으로 隨時代行을 交替	55. 10 直營制 塵芥車 73 台 既存 33 台 配定 40 台 (G.M.C.)	代行制 繼續維持 糞尿車 新配定 68 台 (G.M.C.) 既存車輛 廢棄 55. 1 桶數制收去手數料制度를 廢止하고 污物稅徵收에 依한 月補償金代行制를 採擇 하였으나 半年만에 失敗하고 55. 7 契約代行制로 還元	"
1956			隨意契約으로 代行業者 更新	"
1958		塵芥車 15 台增 車 88 台	"	
1959		塵芥車 10 台增 車 總 98 台	"	
1960	60. 10. 內務部에서 保社部로 事務移管	繼續直營 塵芥廢棄料金徵收 車當 300 환	60. 10. 1 區廳長과 契約更新 60. 12. 24 公開入札(代行業) 實施	社會局
1961	61. 12. 30 污物清掃法 公布 施行 서울特別市一邑을 特別清掃區域으로 策定		61. 6 隨意契約으로 業者更新 61. 7 V.C. 2 台導入 公開入札制 廢止	"
1962	62. 2. 1 서울特別市 行政에 關한 特別措置法에 依據 清掃局 發足 62. 7 軍剩餘車輛 130 台로 既存老朽 車輛 60 % 交替	繼續直營 塵芥車 10 台 增車(總 108 台)	繼續代行 糞尿車 V.C 車 11 台 導入 總 68 台 V.C 13 台	清掃局
1964		64. 11. 1 民間 代行制 實施(共華實業)	代行制繼續	"
1965		代行制繼續 街路清掃車 3 台 導入 總 133 台	"	"

年度	共通關係	塵芥關係	糞尿關係	主管機構
1966		66. 6. 21 市直營制로 還元, 塵芥車 6 台導入 老朽車와 代替	代行制繼續 車輛 29 台 增車	清掃局
1967		塵芥車 98 台增車(美剩餘 GMC 38 台, 이스즈 60 台) 廢車 18 台	代行制繼續 糞尿車(V.C) 增車 (大型 16 台 小型 20 台 其他車輛 42 台增車 (美剩餘 G.M.C) 廢止 28 台	"
1968		小型三輪塵芥車 增車 100 台 廢車 25 台	糞尿車增車 45 台 (美剩餘 G.M.C) 廢車 34 台	"

資料 : 서울特別市, 清掃行政概要, 1968, pp. 8~10.

Table 19. 서울特別市 糞尿貯藏탱크 現況 (1963)

區別	所在地	容量(石)	備考
水登浦	京畿道 始興郡 東面 禿山里 46-1	34,000	62 年度 修理完了 現在使用中
麻浦	麻浦區 新水洞 101	20,000	現在使用中
西大門	高陽郡 神道面 東山里 山 2-9	34,000	덮개없고 底面, 壁破損 現在 修用中
	西大門區 大藥洞 154-1	34,000	收去運搬 및 需要者와의 距離가 適當有效 使用中
城東	京畿道 廣州郡 九川面 岩寺一里 187-1	2,475	使用中
	城東區 聖水洞 2 街 14-1	7,425	"
城北	城北區 彌阿洞 山 8-7	34,000	63 年度 修理計劃
	京畿道 楊州郡 盧海面 道峰里	34,000	"
西大門	西大門區 峴底洞 山 5-7		使用變更 埋沒塵芥車 保管車庫

資料 : 서울特別市, 糞尿行政現況과 將來對策, 1963, p. 41

Table 20. 서울特別市 糞尿貯藏탱크 現況

탱크 所在地	形態	容量(石)	使用區	管理廳	備考
城東區 岩砂洞	큰크리트形	2,475	城東	城東	
" 驛三洞	"	16,800	"	"	
城北區 道峰洞	"	34,000	"	"	
高陽郡 神道面 東山里	"	34,000	西大門	西大門	68. 4. 13 용도廢止 "
麻浦區 新水洞	"	20,000	麻浦	麻浦	
永登浦區 禿山洞	"	24,000	永登浦	永登浦	
東大門區 墨洞	簡易型	140,000	鍾路, 中區, 東大門	城北 東大門	
城東區 風納洞	"	60,000	鍾路, 中區, 東大門	城東 城浦	

탱크所在地	形態	容量(石)	使用區	管理廳	備考
高陽郡 元堂面 新元里	"	60,000	西大門, 麻浦	西大門	
" 道乃里	"	60,000	西大門, 麻浦	麻浦	
永登浦區 方背洞	"	60,000	龍山	龍山	
始興郡 鐵山里	"	60,000	永登浦	永登浦	

資料: 서울特別市, 清掃行政概要, 1968, p. 64.

機械를 導入케 하여 1954年에 다시 工場建設費로 2億1千1百萬圓을 融資하여 1956年 6月에 竣工을 보았으나 塵芥成分의 粗惡 等의 原因으로 正常運營은 不可하였고 1959年 8月 豊國肥料株式會社가 同年 11月 20日 서울市로부터 肥料製造營業免許를 얻어 運營하였으나 같은 結果여서 土炭에다 糞尿를 混合하여 野積하였다가 乾燥 및 自然醱酵한 후 再粉碎하여 少量販賣하다가 運休하고 後에 機械設備는 古鐵로 賣却되었다.⁹³⁾

IV. 結 論

本 研究는 우리나라가 日本을 主軸으로 外勢에 依한 門戶의 開放과 더불어 舊政治體制의 革新的인 改編과 同時에 近代化의 過程을 밧게 되면서 西歐式 醫療制度의 導入으로 施行된 近代衛生行政에 關한 變遷 및 展開過程에 對한 研究의 一面이다.

改革初期부터 政府樹立 以後까지 衛生行政制度, 保健衛生法規, 環境衛生事業機構 및 施行된 事業 等에 關해 文獻調査를 하여 考究한 바 다음과 같은 結課을 얻었다.

1) 1894年 內務衙門에 最初로 衛生局이 創設되어 西歐式醫療 및 保健衛生業務가 始作되어 韓日 合併 直前까지 公布 施行된 關係法規는 40餘個 남짓하나 大概是 日本의 強要에 依하여 一部는 日本側에 諮問을 求해 制定되었다.

傳染病流行時는 防疫에 關한 對民公布令이 日本 警視總監 名義로 公布되어 舊韓國의 獨立性을 이미 喪失하고 있다.

2) 韓日合併 後에는 警務局 直屬 一般警察 및 衛生警察이 分擔하여 保健衛生業務를 執行하였던 바 이는 오직 植民地 朝鮮에만 適用하였던 制度였다.

한편 環境衛生施設中 特히 便益施設이 되는 上水道의 경우 그 普給率은 日人들이 越等히 높았다.

3) 美軍政期에는 軍政法令 第1號로서 日帝 警務局 衛生課를 廢止, 衛生局으로 昇格시킨데 意義가 있으며, 美國式 公衆保健制度의 導入과 더불어 民主的 助長行政方式에 依한 衛生行政의 轉換期였다.

4) 政府樹立(1948年) 以來 保健衛生法規는 食品關係 몇 個를 除外하고는 過去 日帝時代의 것을 大部分 그대로 適用하였다. 한편 衛生業務는 保健 厚生部, 社會部 및 保健部를 거쳐, 1953년에는 內務部로 移管되어 1955年 保健社會部 發足 以後에도 繼續 管掌해 오다가 1960年에 保健社會部로 歸屬되었다.

한편 保健衛生關係法規의 制定, 諸衛生機關의 統合 및 改編 그리고 保健衛生事業 等의 實施는 1960年代 初期부터 었다.

參 考 文 獻

- 1) 金斗鍾, 韓國西醫學史, 韓國現代文化史大系 III, 高大民族文化研究所, 339, 1978.
- 2) 上揭書, 340.
- 3) 崔昌圭, 民族과 祖國 그리고 歷史, 昌震社, 125, 1979.
- 4) 서울特別市, 서울六百年史, 第三卷, 57~68, 1970.
- 5) 趙芝薰, 開化運動의 「모티브」와 그 本質, 韓國思想叢書 III, 景仁文化史, 347, 1975.
- 6) 서울特別市, 前揭書, 121.
- 7) 上揭書, 128.
- 8) 國會圖書館,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 6, 1970.

- 9) _____, 韓未近代法令資料集, Ⅴ, 109, 1972.
- 10) 金斗鍾, 韓國醫學文化大年表, 探求堂, 635, 1966.
- 11) 上揭書, 596~597.
- 12)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504~505, 1966.
- 13) 國會圖書館, 韓未近代法令資料集, Ⅵ, 159~160, 1971.
- 14) 上揭書, 339.
- 15) 上揭書, 514.
- 16) 日本統監部, 韓國施政年報(1908), 165~166, 1910.
- 17) 白石保成, 朝鮮衛生要義, 191~192, 1918.
- 18) 朝鮮總督府, 朝鮮施政年報(1911), 357~358, 1913.
- 19) _____, 朝鮮施政年報(1913), 247, 1915.
- 20) 國會圖書館, 韓未近代法令資料集Ⅶ, 456~457, 1972.
- 21) 上揭書, 458.
- 22) 上揭書, 459.
- 23) 上揭書, 462.
- 24) 日本統監部, 韓國施政年報(1909), 211~216, 1911.
- 25) 上揭書, 489.
- 26) 서울特別市, 前揭書, 284.
- 27) 朝鮮總督部, 朝鮮施政年報(1910), 341~342, 1912.
- 28) 京城日報社, 朝日年鑑(1933), 541, 1934.
- 29) 서울特別市, 서울六百年史, 第四卷, 173, 1981.
- 30) 朝鮮總督部, 朝鮮施政年報(1911), 348, 1913.
- 31) 서울特別市, 前揭書, 270.
- 32) 上揭書, 175.
- 33) 上揭書, 176.
- 34) 上揭書, 177.
- 35) 上揭書, 182.
- 36) 上揭書, 184.
- 37) 上揭書, 183~184.
- 38) 上揭書, 1094~1095.
- 39) 上揭書, 1095~1096.
- 40) 朝鮮總督部, 朝鮮施政年報(1923) 337, 1926.
- 41) 서울特別市, 前揭書, 1096.
- 42) 白石保成, 前揭書, 33~34.
- 43) 申東源, 日帝의 保健醫療政策 및 韓國人의 健康狀態에 關한 研究, 85~86, 1986.
- 44) 平安南道警務部, 衛生警察一斑, 85, 1913.
- 45) 小串政次, 朝鮮衛生行政法要論, 2~3, 1921.
- 46) 朝鮮總督部, 朝鮮法令輯覽, 上卷, 1~2, 1940.
- 47) 上揭書, 1~2.
- 48) 朴熙寬, 朝鮮法令大典, 修文書館, 61~63, 1911.
- 49) 小串政次, 前揭書, 14~15.
- 50) 朝鮮總督部, 朝鮮施政年報(1933) 415, 1935.
- 51) 朝鮮總督部, 朝鮮事情(1941), 248, 1942.
- 52) _____, 朝鮮事情(1942), 263, 1943.
- 53) _____, 朝鮮事情(1944), 270, 1945.
- 54) 白石保成, 前揭書, 157~158.
- 55) 京城日報社, 前揭書, 453.
- 56) 朝鮮總督部, 朝鮮事情(1943), 271, 1944.
- 57) 서울特別市, 前揭書, 413.
- 58) 上揭書, 417~424.
- 59) 上揭書, 1107~1102.
- 60) 上揭書, 1102.
- 61) 서울特別市, 奮尿行政現況과 將來對策, 2, 1963.
- 62) 京城日保社, 前揭書, 540.
- 63) 서울特別市, 서울六百年史, 第四卷, 1102~1103, 1981.
- 64) 安商環, 韓國衛生行政機構變遷의 最近世史의 考察, 11, 1960.
- 65) 內務部治安局, 美軍政法令集, 兵學社, 5, 1956.
- 66) 上揭書, 16.
- 67) 上揭書, 25.
- 68) 保健年鑑社, 大韓保健年鑑, 1, 1956.
- 69) 安商環, 前揭書, 13~14.
- 70) 保健年鑑社, 前揭書, 1.
- 71) 서울特別市, 서울六百年史, 第五卷, 556~558, 1983.
- 72) 保健年鑑社, 前揭書, 1.
- 73) 安商環, 前揭書, 16.
- 74) 上揭書, 18~19.
- 75) 韓國法令編纂會, 大韓民國法令沿革集, 1~2, 310-6~14, 1968.

- 76) 國立保健院, 保健事業評價調查豫備報告書, 518, 1961.
- 77) 朴南永, 國立保健院發達史, 9~32, 1978.
- 78) 國立保健院, 前掲書, 518~519.
- 79) 서울特別市, 前掲書, 559.
- 80) 國立保健院, 前掲書, 506~507.
- 81) 서울特別市, 前掲書, 761.
- 82) 上掲書, 775.
- 83) 上掲書, 782~785.
- 84) 國立保健院, 前掲書, 512~513.
- 85) 서울特別市, 前掲書, 567~569.
- 86) _____, 糞尿行政現況斗 將未對策, 4, 1963.
- 87) 서울特別市 清掃局, 清掃行政概要, 9, 1968.
- 88) 서울特別市, 前掲書, 9.
- 89) 서울特別市 清掃局, 前掲書, 47~49.
- 90) 서울特別市, 前掲書, 35~41.
- 91) 上掲書, 38~41.
- 92) 서울特別市 清掃局, 前掲書, 64.
- 93) 上掲書, 90.